공개용

2024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2024. 5.



(감 사 관)

2024년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4. 3. 4. ~ 3. 15.(10일간)

○ **감사범위**: 2021. 5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4개반 22명

○ **감사중점**

- 기업애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 주요 사업 재정·예산의 운영현황 확인·점검
- 토목·건축 공사의 집행과정과 안전성 점검
- 청렴 취약업무(인사, 회계, 계약, 공사, 인·허가 등) 운영실태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성
-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취약분야 운용 실태 등
- 직전 감사 등의 이행실태, 동일 반복 지적사례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징수	추급 환급	계	징계	훈계	
91	**35**	**52**	**3**	**1**	287,272	268,158	19,114	**19**	**1**	**18**	**5**

○ 처분요구 내역

(단위: 건, 천원, 건/명)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	인 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운영 소홀	○과 외 8개 부서	주의	-	-	-	
2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과	주의	-	훈계○	-	
3	사회복지	기초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과	시정	회수 17,434 추급 15,894	훈계○	-	
4	사회복지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과	주의	-	-	-	
5	사회복지	국민기초 군입대자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 기금 지급 부적정	△과	시정	회수 4,166	-	-	
6	사회복지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과	시정	회수 320 추급 3,220	-	-	
7	체 육	▤▤▤▤▤▤▤ 운영 보조금 관리 소홀	♧과	-	-	-	기관 경고	
8	문 화	문화재 관리업무 소홀	◍과	주의	-	-	-	
9	보 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	-	-	
10	보 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처리 부적정	◔과	-	-	-	기관 경고	
11	보 건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등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과	시정	회수 3,739	-	-	
12	보 건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조회 일부 미실시	◔과 외 2개 부서	시정	-	-	-	
13	위 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	-	-	
14	위 생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등 업무 소홀	◈과	시정	-	-	-	
15	여 성	♧♧♧♧·♧♧♧♧♧♧♧♧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과	-	-	-	기관 경고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6	보 조 금	☆☆☆ ☆☆☆☆보급 보조사업 등 집행 부적정	⊙과	주의	-	-	-	
17	보 조 금	❖❖❖❖❖❖❖❖❖❖ 지원 보조사업 등 정산심사 소홀	◰과 외 2개 부서	주의	-	-	-	
18	행 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부적정	⊗과	개선	-	-	-	
19	계 약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검토 소홀	◐과 외 2개 부서	주의	-	-	-	
20	계 약	규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과	주의	-	-	-	
21	계 약	⊙⊙⊙⊙⊙⊙⊙ 관제기 정비 조달구매 계약 이행 부적정	⊗과	주의 통보	-	훈계◯	-	
22	계 약	▦▦▦▦▦▦▦▦▦▦▦ 제조 구매 입찰 계약 이행 부적정	◬과	주의	-	훈계◯	-	
23	계 약	◲◲◲◲ ◲◲◲◲ ◲◲ 카메라 제조 구매 입찰 계약 이행 부적정	♤과	주의	-	훈계◯	-	
24	지 방 세	취득세(위법건축물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추징 150,972	-	-	
25	지 방 세	재산세(사권제한 토지 감면)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추징 62,390	-	-	
26	지 방 세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추징 8,236	-	-	
27	지 방 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미흡	㉦과	시정	-	-	-	
28	세외수입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동 등 12개 부서	시정	추징 12,675	-	-	
29	공유재산	평생학습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관리 부적정	◎과	주의	-	-	-	
30	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부과 및 사용허가 등 관리 소홀	☆과 외 3개 부서	시정	-	-	-	
31	예 산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과	주의 개선	-	-	-	
32	회 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과, □과	시정	환수 946	-	기관 경고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33	공유재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과	주의	-	-	-	
34	보 조 금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교부 등 부적정	▥과	주의	-	-	-	
35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소홀	▤과 외 4개 부서	주의	-	-	-	
36	계 약	미디어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업무 처리 소홀	◐과	주의	-	-	-	
37	계 약	▤▤▤▤축제 행사 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과	주의	-	징계◯ 훈계◯	-	
38	계 약	계약업무 운영 부적정	☆과	개선	-	-	기관 경고	
39	계 약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과 외 12개 부서	주의	-	-	-	
40	계 약	공사계약 하도급 부적정	★과	주의	-	-	-	
41	계 약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 부적정	★과	주의	-	훈계◯	-	
42	건 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과	주의	-	-	-	
43	건 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업무 소홀	▨과	주의	-	-	-	
44	건 축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관리 소홀	◩과	시정	-	훈계◯	-	
45	재 난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관련 업무 소홀	♤과	시정	-	-	-	
46	건 설	□□□□□ 생태체험교육관 건립사업 공사감독 소홀	⊙과	주의	-	-	-	
47	건 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확인 소홀	☆과 외 3개 부서	시정주의	-	-	-	
48	건 설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 적용 부적정	◧과 외 4개 부서	주의	-	-	-	
49	건 설	비관리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 소홀	◩과	시정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50	건 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측량 이행 절차 소홀	☆과 외 2개 부서	주의	-	-	-	
51	건 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과	시정	-	-	-	
52	건 설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 업무 소홀	☆과, ◐과	주의	-	-	-	
53	건 설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과 외 6개 부서	주의	-	-	-	
54	공원녹지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과, ◨소	시정 주의	-	-	-	
55	산 림	산림산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	-	-	
56	조 경	조경석 반입에 따른 사전 승인 및 검수 소홀	⊙과	주의	-	-	-	
57	공 원	남동열린근린공원 조성공사(조경) 산출수량 부적정	⊙과	시정	-	-	-	
58	건 설	건설공사 보험료 계상 및 정산 소홀	⊗과 외 3개 부서	시정 주의	회수 5,895	-	-	
59	건 설	건설공사 사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소홀	◐과 외 4개 부서	시정 주의	회수 1,385	-	-	
60	건 설	공사 일시정지 업무 소홀	⊗과 외 2개 부서	주의	-	-	-	
61	건 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업무 소홀	◐과 외 5개 부서	주의	-	-	-	
62	교 통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소홀	⊗과	시정	-	-	-	
63	지역경제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절차 부적정	◧과	주의	-	-	-	
64	지역경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절차 부적정	◪과	주의	-	-	-	
65	농축수산	축산물 위생검사 및 위생교육 관리 소홀	◳과	시정	-	훈계○	-	
66	농축수산	위판장 시설개선 지방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과	주의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67	농축수산	농축수산 지방보조사업 추진절차 미준수	□과	주의	-	-	-	
68	자원순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 소홀	□과	시정	-	-	-	
69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관리 소홀	◍과 외 12개 부서	시정	-	-	-	
70	자원순환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미준수	⊙과 외 3개 부서	주의	-	-	-	
71	환 경	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소홀	◬과	주의	-	-	-	
72	환 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관리 소홀	◬과	시정	-	-	-	
73	지적·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부적정	□과	시정	-	-	-	
74	지적·토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지연 과태료 미부과	□과	시정	-	-	-	
75	지적·토지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의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 부적정	□과, ▨과	주의	-	-	-	
76	지적·토지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조치 부적정	□과	주의	-	-	-	
77	지적·토지	개업공인중개사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 및 조치 부적정	□과	시정	-	-	-	
78	보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기본조사서 등 작성 부적정	◧과 외 4개 부서	주의	-	-	-	
79	보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재결 신청 부적정	◪과	주의	-	-	-	
80	교 통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절차 소홀	□과	주의	-	-	-	
81	교 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과	주의	-	-	-	
82	교 통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	-	-	
83	교 통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84	교 통	직권말소 건설기계 번호판 미반납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	-	-	
85	교 통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	-	-	
86	교 통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	-	-	
87	교 통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目과	주의	-	-	-	
88	공 사	물품구매 계약 등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	-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도 미운영

가.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에서는 임용예정부서의 채용요청에 따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련규정에 의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여야 하고,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

다 가점하여야 하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에 따르면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인원의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1)]

따라서, 남동구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최종선발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후 취원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한 후「국가유공자법」제31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최종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해야 함에 따라 공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제도에 대한 별도 안내없이 응시원서에만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을 체크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였으며, 최종선발인원이 ○명 이상이며

1)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시험의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하여야 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점을 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2)]

라.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운영 소홀 및 제척·회피·기피제도 미운영

가. 업무개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부서에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채용절차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채용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 구직자의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사진부착 포함) 등 편견 항목을 걷어내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되는 인적사항[3)]

2) 다만, 가점 제도 미운영 채용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상 취업지원 대상자가 없어 채용에 영향을 준 사항은 없음
3) 인적사항은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재산 등 의미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사진 요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응시자의 출신학교, 가족관계, 직무와 무관한 경력 등 불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공정채용 가이드북(2019)」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의 전형별 합격자 결정기준(평정기준), 가점 및 우대요건의 항목과 기준은 시험공고일 전 확정토록 하고 있으며,

면접시험 절차를 진행할 때 면접진행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통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면접위원의 평가오류를 줄이고 면접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공정채용 가이드북(2019)」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전형별 시험위원은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척 · 기피 · 회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시 배제토록 하고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각 전형별 시험위원 위촉시 제척 · 기피 · 회피 서약서 미징구 등 이해충돌 방지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 기피 · 회피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면접전형 진행시 서명란이 없는 면접심사표 서식으로 면접위원이 심사를 진행하였고, 면접위원이 연필로 평정한 결과를 보완

조치없이 그대로 면접결과로 확정였으며, 응시원서 사진 징구, 직무와 무관한 근무이력을 면접위원에 제공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였고, 채용계획 수립시 전형별 심사기준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과 등 8개 부서에서는 채용절차 운영을 소홀히 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사회복지○○○ A는 20**. *. **.부터 20**. *월 현재까지, 지방사회복지●● B은 20**. *. *. 부터 20**. *. **. 까지, △과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Ⅰ. 수급자 신청-'4. 신청절차(라. 신청접수),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문서를 받아 시스템에 신청 등록하며, 군·구에서는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등 민원처리를 군수·구청장이 처리해야 함을 숙지하고, 신청 서류를 즉시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민원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는바, 만일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보완요구와는 별개로, 접수받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급여신청일의 자동 부여는 물론, 새올민원행정시스템에 급여 종류별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자동부여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구의 통합조사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접수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바,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등 조사대상 확인 단계를 거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여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신청인이 해당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등록 후 수정 결과를 적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접수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를 하였을 때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하고,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권자가 군·구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즉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되는 바, 군·구 통합조사 담당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류의 등록·접수, 공적자료 등 조회요청 및 결과반영, 생활실태조사, 결과 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지체없이 수행하여 최저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조사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에서 새올민원행정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 남동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청서접수, 자료조사 요청’ 등 ***건의 절차이행을 지연 처리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뒤늦게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청조사 부적정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신청 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를 신청등록 즉시 구 통합조사팀으로 이송해야 하나, *일~**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야 관련서류를 이송함에 따라 신청조사 시작 시점이 지연되었고,

남동구 △과 ▽팀에서는 법정처리기한 내 조사결정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송된 신청서류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으로의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주택조사를 적기에 요청 처리해야 함에도, ○○○ 등 **명의 신청서류를 이송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 접수처리 하였으며, 공적자료(금융포함)의 경우 최대 ***일(**건), 주택조사는 최대 ***일(**건) 경과시점에서야 자료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조회요청이 지연된 만큼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의 급여결정시기 또한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급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하고, 추가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정처리기한 내 조사처리 되도록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일에 민원완료 처리를 해야 함에도,

남동구 △과 ▽팀에서는 대상자에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야 '구비서류 미비' 등 사유로 서류보완을 요구하면서 '새올 민원행정시스템 - 민원처리 - 민원진행상황처리' 메뉴상 '보완보정 요구통보일'을 등록하여 민원처

리기한을 변경한 사항이 확인되었고,

급여신청자 ○○○ 등 ○명은 신청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사 결정되기 최소 *일에서 최대 ***일 전 새올민원행정시스템상에 '민원처리 완료'로 입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처리 하였으며, 이들의 보장결정일과 민원처리기한을 비교·확인한 결과, 짧게는 *일에서 최대 **일까지 처리기한이 초과되었다.

위와 같이 남동구 △과 ▽팀에서는 수급자 신청에 따른 접수·조사 등 절차를 지연 처리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명의 수급자 선정이 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급여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원 또한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들 중 ○○명은 생계급여와 동시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로,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급여 선정일'에 개시되는 만큼 의료급여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의료급여 선정 지연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점 또한 늦춰지는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 A, B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가 이행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기초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사회복지○○○ C은 20**. *. *.부터 20**. *. **. 까지, 지방사회복지○○○ D은 20**. *. *. 부터 20**. *. **. 까지, △과에서 기초생계급여 지급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책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하여 소급 산출된 급여를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수급자의 보장결정일이 매월 15일 이후이거나 계좌 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급여 담당자는 매월 정기지급일 이후 급여의 수시생성 등을 통해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생계급여가 착오 없이 신속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군·구의 급여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급여 내역의 누락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지급 확정한 후,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한 회계 부서로의 지급의뢰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지급처리 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4항,「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가 생계 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결정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해야 하고,

추후 생계급여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는 기초 생계급여와 우선 지원된 긴급 생계지원비를 비교해, 해당 월의 긴급 생계지원액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생계급여가 추가 지급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급여 동시 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 시, 급여 담당자는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상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 생계급여가 자동 연계되지 않음을 숙지해 월별 급여액에 대한 비교는 물론, 추가지급 해당 월에 대한 지급액을 명확히 수기 산출함으로써, 지급 기준에 부합된 급여가 수급자에게 착오 없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법령·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군·구 귀책 사유로 인해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군·구에서는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행정 착오 등 과오 수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구 생계급여 지급 업무 담당자는 급여의 지급 확정 및 지급의뢰에 앞서, 수기 계산 혹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급여내역 상 잘못 산출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해당 급여가 적기에 착오 없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는 기초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 동시 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급 시, 긴급생계지원 동시 신청자의 해당 월별 지급액 수기 계산 오류, 신청월부터의 소급 지급 소홀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급여 총 15,894,482원(가구별 **천원~*,***천원)을 과소 지급하여 가구별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였으며,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는 총 17,434,496원(가구별 **천원~*,***천원)의 급여를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지급하여 잘못 지급한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책정 월의 정기 혹은 추가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 기준일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92일이 경과(급여 신청일로부터는 80일~230일 경과)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지급되는 등 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생계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 C, D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 17,434,496원은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15,894,482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며,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간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하는 바, 조건제시유예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예외적으로 군·구 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대상자에 한해 적용하도록「자활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만 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 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시험 응시행 등 시험준비생,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기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에 해당되며, 「자활사업 안내」에서 각 대상자별 선정기준 및 제출(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지침을 근거로 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를 통해 조건제시유예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군수·구청장이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결정하는 자,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로,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두 번째 대상자는 단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연 2회까지 1회 최대 3개월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 가능하나, 다만 이 경우에는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하되, 진단서의 경우 치료(예상)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명,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 세 번째 기준은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위 세가지 기준에 따른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실확인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을 하며 제출증빙서류 세부내역 확인소홀, 유예기간 결정 부적정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에 따른 처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회~ 5회에 걸쳐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 처리된 일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1~3년간 동일 의료기관에서 유사 질병에 대한 향후 치료 의견 등 별다른 내용 변경 없이 기록·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서류 상 진단일이 서류 발급일로부터 상당기간(4개월~15개월) 이전날짜로 기록되어 있거나 진단일 기록 없이 서류 발급 연월일만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되는 등 대상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자료가 과거의 진단내역이 아닌, 제시유예 결정시점에 진단되어 기록된 자료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위 대상자들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조건유예자로 선정하였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제시유예자로 결정된 대상자 중 ○○○, ◎◎◎은 **년과 **년에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처리되면서 치료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두 차례 모두 3개월의 기간을 적용해 조건제시유예 결정되었다.

그리고 대상자가 조건제시유예자 결정에 따른 증빙자료로 소견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소견서상 병명,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물론, 치료(예상)기간,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남동구 ◇과에서는 대상자가 제출한 소견서에 앞서 나열한 항목별 세부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선정기준에 부합된 대상자에 한해 제시유예자로 선정해야 하나, ◇◇◇ 등 ○명이 제출한 소견서상에는 활동 및 근로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 누락 등 미비한 사항이 확인됨에도 이들 역시 3개월간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정 처리하였으며,

대상자 중 ◆◆◆ 등 ○○명의 경우에는 조건제시유예 시작일이 유예자로 선정된 결정일 이후가 아닌, 결정일로부터 3일~91일 이전일을 기점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소급적용하였는데, 특히 대상자 □□□의 경우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임에도,

20**.*.**~20**.**.**까지 3개월간 제시유예 할 것을 유예기간 만료일에서야 소급 결정 처리하였다.

또한 남동구 ◇과에서는 ■■■, △△△, ▲▲▲을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하면서 제시유예 선정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한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없이 '제시유예 기간 내 진단서 제출예정'으로 내부결재 문서에 기재한 후, 대상자 ○명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을 첨부해 1~3개월간 조건제시유예자로 결재 처리하였으며, 20**. *월 감사 기간 중 위 대상자 ○명으로부터 유예결정 후 제출된 진단서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대상자들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조건제시유예자 선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① 조건제시유예 기준 조사 시점에 진단·확인됨을 증빙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단서 등 제출서류와 사실확인조사서를 토대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해 단기적으로 조건제시유예 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국민기초 군입대자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기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군입대(제대)자에 대한 군입대 의료급여 자격 취득 및 중지 등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등 1종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2종수급권자로 구분된다.

그리고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호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법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 중 현역 사병 등 군입대자의 의료급여 자격은 해당 수급자의 군입대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입대일로 자격을 책정하고, 제대일로 자격이 중지되도록 해야 하는바, 특히 군입대 자격 취득 시, 제대일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여 군 제대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초수급 군입대자가 군 제대 후 10일 이내 국민기초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대일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하고, 제대일로부터 10일 이후 국민기초를 신청한 경우에는 급여 결정일에 의료급여를 개시하며, 제대 후 국민기초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대일 다음날로 의료급여를 상실 처리하도록 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구의 의료급여 담당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군입대자 발생 시, 입대일을 기준으로 군입대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고, 군입대 자격 취득 시, 제대일을 시스템에 입력해 군 제대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등록·관리해야 함은 물론, 군 제대일에 군입대자 자격을 중지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기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중 ☆☆☆ 등 군입대자 ○명의 의료급여 자격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입대 의료급여 자격책정을 입대일이 아닌, 군 입대일로부터 1일~31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처리하였고, ★★★ 등 군제대자 ○○명에 대하여는 제대일을 기준으로 군입대 의료급여 자격을 중지해야 함에도, 제대한 날로부터 1일~782일이 경과 된 시점으로 중지처리를 하는 등 자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중 ◇◇◇, ◆◆◆은 군 제대 후 국민기초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로, 이들의 경우 의료급여 중지 시점인 군 제대일로부터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 중지(제대일) 및 의료급여 상실(제대일 다음날)처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기에 했어야 함에도, ◇◇◇, ◆◆◆의 자격 중지를 기준일로부터 각각 ***일, ***일 경과 시점에서야 처리하였고, 대상자 □□□의 경우에는 군 제대일(20**. *. **)로부터 ***일이 경과된 20**. *. **에 국민기초를 신청하여 20**. *. *에 책정됨에 따라 책정일을 기준으로 의료급여가 개시되는바, 군 제대일로부터 국민기초 책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급여 자격을 중지해 의료급여기금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처리했어야 하나, 군 제대일 이후에도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지 않고 줄곧 유지하다가 국민기초 책정일에서야 뒤늦게 자격을 중지 처리 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어야 할 ○명의 급여 총 4,166,090원이 의료급여기금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등 국민기초 군입대(제대)자에 대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① 의료급여기금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4,166,09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군입대자의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을 근거로 등록장애인에게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토록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수당 의무지급 대상자인바, 이들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등록장애인이

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기초(생계·의료)급여 신청일이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이 되며,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결정일을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로 보아 월 6만원(재가)[4], 월 3만원(시설)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기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되거나 기존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중 신규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대상자를 면밀히 확인하여 장애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대상자 모두가 마땅히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남동구에서 지급된 장애수당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동구는 기 등록장애인 중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로 책정되거나 기존의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중 신규로 장애 등록이 된 ◎◎◎ 등 ○○명에게 급여 신청일 혹은 장애 등록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장애수당 총 3,220,000원(대상자별 1~20개월분, 40,000원~940,000원)을 **. *월 감사 기간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 등 ○명의 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 기준시점을 착오 적용함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기간동안 총 320,000원(대상자별 1~6개월분, 40,000원~240,000원)의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 개시 월을 기준으로 정기·추가지급을 통해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 기준 월로부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0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서야 지급되는 등 기초 생계·의료수급 등록장애

4) 장애수당(생계·의료) : '21-'22(월 4만원), '23(월 6만원) / 장애수당(시설) : '21-22(월 2만원), '23(월 3만원)

인의 추가적 비용 보전을 위해 적시에 지원되어야 할 장애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① 지원대상자 ○○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3,220,000원을 지급하시고, ○명에게 과다 지급된 장애수당 32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이 적기에 착오 없이 지급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 관 경 고

제　　목　**▤▤▤▤▤▤▤ 운영 보조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에서는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20**.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5]하였으며,

20**.**.**. ㈜인천▤▤▤▤▤▤▤과 창단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6]을 체결하였고, 20**.**.**. ㈜인천▤▤▤▤▤▤▤에서 ▤▤▤▤▤▤▤을 창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에서는 ㈜인천▤▤▤▤▤▤▤에 20**년도와 20**년도 ▤▤▤▤▤▤▤ 운영 보조금 총 10억 원(연간 5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20**년도 이후에는 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였다.

5) (조례 유효기간)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 (업무협약) 총 4건
① 연고지 협약서: 연고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정함
② 재정지원 확인서: ▤▤▤▤▤▤▤ 선수단 운영비 지원
③ 경기장 사용 협약서: ▤▤▤의 연습 및 경기를 위한 공간 제공
④ 투명·공정 구단운영 협약서: 법인 이사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모 절차 이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4항 각 호[8]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조례 제1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9](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1]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20**년도, 20**년도에 ▤▤▤▤▤▤▤ 운영 보조금을 교부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7) 20**.*.**.「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분리하여「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월 ▤▤▤▤▤▤▤ 창단 시에는「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관리하였으므로 당시 조례에 근거하여 확인서 작성

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행위 당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시행 20**.**.*.)에 근거하여 확인서 작성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된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한 후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는 20**년도와 20**년도에 ㈜인천目目目目目目目에 보조금을 교부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인천目目目目目目目에서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부서에서 검토한 目目目目目目目 운영 지원계획(♧과-***, 20**. *. *., ♧과-***, 20**. *.**.)을 근거로 目目目目目目目 운영보조금 총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3.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집행 및 보조사업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관리기준 -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ㅇ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기준 -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4]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 - ㅇ 지방보조사업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에 따르면 따르면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目目目目目目目에 통지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이하 “교부조건”이라 한다) 제3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고, 사업 완료 후 20% 미만으로 자부담하였을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32조의6 및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인천目目目目目目目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받아 자부담의 예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했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의 집행이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되고, 자기부담금이 우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했다.

또한, ▤▤▤▤▤▤▤ 운영비 보조금을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액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는 ㈜인천▤▤▤▤▤▤▤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자부담의 예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과에서는 ㈜인천▤▤▤▤▤▤▤에서 20**년도 실적보고서에 총 자부담액 578,300천 원 중 570,712천 원을 누락한 7,588천 원만을 정산하여 제출하였고,

20**년도 실적보고서에는 총 자부담액 655,700천 원에 대한 정산액과 집행내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관리기준 -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 교부조건 부여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20**. *. *일자로 시행된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하고,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인천▤▤▤▤▤▤▤에서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광고수익금 총 755,000천 원에 대해 반환 조건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반납받을 수 있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는 ㈜인천▤▤▤▤▤▤▤에서 ▤▤▤▤▤▤▤을 운영하며 광고수입금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이었음에도 교부조건에 수익금 반환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인천▤▤▤▤▤▤▤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광고수익금 총 755,000천 원에 대해 자부담액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고, 실적보고서에 수익금 발생액 및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에서는 ㈜인천▤▤▤▤▤▤▤에서 20**년도 보조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2,437천 원에 대해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에서 보조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1,181천원을 사업계획 변경 절차 없이 20**. *.**. ◉◉◉◉ 연회비에 사용하였고,

20**. *.**. 회계 연도 마감 이후 발생한 총 619천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난 연도의 전지훈련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정산을 완료하여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소홀하게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기관경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모 절차를 미이행한 사항, 자부담금의 예치 여부를 미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사항,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은 기관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여 엄중히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재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황은 [표1]과 같고, ◍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따라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업무, 현상변경 행위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표1] 남동구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연번	지정번호	지정유형	명칭	규모	소재지	관리주체	지정일자	비고
1	제562호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1주/4,581㎡	남동구 장수동 63-6	남동구청장	2021.02.08	국가 지정
2	제6호	유형문화재	논현포대	2좌 /1,826㎡	남동구 논현동 648-1 / 1필지	남동구청장	1982.03.02	시 지정
3	제3호	기념물	김재로묘	1기 / 434.3㎡	남동구 운연동 산64-13번지/ 1필지	남동구청장	1990.11.09	시 지정
4	제7호	기념물	조정만묘	1기/516.9㎡	남동구 도림동 산46-3번지/ 1필지	임천조씨 오제공파 종중	1990.11.09	시 지정

5	제12호	기념물	장수동은행나무	1주/674.7㎡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4필지	남동구청장	1992.12.16	시 지정
6	제50호	기념물	이여발묘	1,774㎡	남동구 운연동 343-1번지/ 1필지	한산이씨 정익공파종중	2002.02.04	시 지정
7	제62호	기념물	월성박씨종중묘역	7,426㎡	남동구 서창동 649	월성박씨 종중	2010.05.03	시 지정
8	제63호	기념물	이승훈묘	8,430㎡	남동구 장수동 산132-1번지 / 1필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2011.12.28	시 지정
9	제19호	문화재자료	장도포대지	2,275㎡	남동구 아암대로 1614 / 3필지	남동구청장	2001.04.02	시 지정

※ 자료: 남동구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2항, 조례 제18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2. 개별기준 바목에 따라 1차 위반은 15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기한 내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착수 및 완료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과에서는 총 ○○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건에 대해 신청인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았고,

총 ○건의 현상변경 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에도, ◍과에서 시 담당 부서로의 신고서 제출을 지연하여 결과적으로 기한이 경과되어 신고서가 제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과에서는 총 ○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건에 대해 신청인이 현상변경 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완료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았고, 총 ○건의 현상변경 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시 담당 부서로의 신고서 제출을 지연하여 결과적으로 기한이 경과되어 신고서가 제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과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은 현상변경 건에 대해 문화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착수 및 완료 미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화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 '문화재 현상변경 착공 신고 및 준공 처리 알림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신고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처리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및 직접 보관 허가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2. 의료기관 휴·폐업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라 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고 휴·폐업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발간자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4.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가.관련 법령 및 신고요령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의료업을 수일 또는 수개월 전부터 행하여 오지 않았다하여

폐업한 날짜를 소급하여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임(2007.01.26., 의료정책팀-332)'이라고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보건소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의료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휴·폐업 시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 후 신고 처리하고, 폐업날짜를 소급하여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과는 ○○건은 폐업 신고 시 조치사항 중 환자 권익 보호 조치 안내문 게시사항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과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이 게시되지 않았음에도 의료법 제40조제5항에 대한 확인 없이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건은 폐업날짜를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소급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존 절차 이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진료기록부)나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각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3.2. 일부개정/시행 2023.3.5.)에 따라 2023. 3. 5일 이후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 *월 ~ 20**. **월에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처리와 ○○건의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을 허가하였다.

◔과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대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첨부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는 '◎◎한의원' 등 ○○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휴·폐업일 당일 또는 휴·폐업일 이후에 휴·폐업신고서의 붙임서류로 신고서와 같이 제출받아 처리하였으며,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개정시행일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 ○○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후 허가하였어야 하나 진료기록 보관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허가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①「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폐업날짜를 소급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처리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 관 경 고

제　　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10]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관청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0)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 : "마약류취급자"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라. 대마재배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바. 마약류관리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해당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이를 [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

[표1]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라 마약류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고,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홍보자료로 게시된 「폐기 보고 및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안내 가이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폐기는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표2]의 예시(다른 방법도 가능)를 참고하여 취급자 조건과 환경에 따라 폐기 방법을 선택하고, 이후 폐기물은 의약품 폐기물 버리는 방식에 따라 폐기한다고 되어 있다.

[표2] 폐기방법 예시(폐기보고 및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안내 가이드)

제형 구분	예 시
주사제	▪ 앰플이나 바이알에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어 희석 ▪ 마약류에 잉크나 베타딘을 떨어뜨려 마약류 아닌 것으로 변화 ▪ 고무마개가6 있는 바이알은 마약류를 꺼내서 다른 폐기물과 섞어 버리거나 주사기로 물을 넣어 희석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려야 함
경구제	▪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어 희석 ▪ 잉크나 베타딘을 떨어뜨려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 자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자료 재구성

또한 안내 가이드의 마약류 폐기 근거 서식에 따르면 마약류 폐기일, 폐기 방법, 입회자 등 정보확인을 위하여 폐기 근거 서식을 남기고, 실제 근거자료인 사진(영상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폐기 근거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는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가급적 폐기 전·후, 의약품 폐기물 봉투에 투입한 모습 등 폐기 단계를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안내 가이드의 폐기절차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가 발생하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기관에 제출하고 관할 행정기관(보건소)는 신청사항, 실물확인 후 폐기처리를 진행하고 폐기종류, 폐기일자,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을 기재한 폐기신청 민원처리 결과 공문을 마약류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문을 수령한 마약류취급자는 공문을 바탕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이 취급자가 보고한 폐기보고 내역을 확인하는 등 폐기결과를 최종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보건소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20**년 ~ 20**년까지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총 ○○○건의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을 받아 ○○○○건의 마약류를 폐기 처리하였으며, 마약류의 폐기 시에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에 따라 적정한 폐기방법을 선택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 단계를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

진 등을 증빙자료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을 받은 마약류를 폐기처리하면서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실제 폐기 근거자료에 대한 폐기보고 없이 새올시스템에만 폐기처리 등록하고 마약류취급자에게 폐기 통보하였으며,

20**년~20**년 동안 처리한 ○○○○건의 마약류 폐기처리에 대한 근거 사진 등 폐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컴퓨터 등 저장매체 등에도 기록·보관되어 있지 않아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확인할 수 없으며, 종합감사 사전자료 제출기간이었던 20**.*.**.일 이후 실시한 마약류 폐기 처리부터 '마약류 폐기 결과 보고[◔과-****(20**.*.**.)]'를 시행하는 등 마약류 폐기업무를 소홀히 하여 마약류 폐기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폐기보고 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처리과정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취급자가 신청한 폐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사항 및 실물확인을 하고 폐기처리를 진행한 후에 폐기종류, 폐기일자,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을 기재한 폐기신청 민원처리 결과 공문을 마약류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마약류를 폐기처리하지 않고 보유한 채 마약류취급자에게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처리 알림' 공문을 ○○건 통보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에게 폐기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최소 *일에서 최대 **일이 지나 실제 폐기를 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를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기관경고] 마약류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점, 폐기 마약류를 실제 폐기하지 않은 채 폐기처리 알림 통보한 사항 등 마약류 폐기절차에 따라 업무처리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오니,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등 등록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에서는 「모자보건법」 및 보건복지부「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카드 작성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모자보건법」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

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및 시행규칙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에 따르면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시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에 따르면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정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Ⅵ.2.나.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 받은 보건소장은 등록카드를 작성·관리(전산망 입력 관리 가능)하여야 하고, 의료비 지원 범위는 요양

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은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비 지원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에 의거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예산부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보건소 ▣과(이하 '▣과'라 한다.)에서 20**. *월 ~ 20**. **월까지 지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총 ○○○건 81,340,300원의 지원내역을 확인한 결과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의료비로 지원할 수 없는 예방접종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보호자 식대, 체온계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하거나, 지원금액 산정방법에 따른 지원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하여 총 2,400,780원의 의료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

드에 작성하여 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 *월 ~ 20**. *월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급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명에 대해서는 등록카드나 전산망(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에 작성·관리하지 않았다.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모자보건법」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Ⅴ.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범위는 계산서·영수증 서식 상, 질환별 지원기간 내에 입원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합계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택진료료, 비급여 선택진료료 외”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 중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 20**. *월 ~ 20**. **월까지 고위험 임산부에게 지원한 의료비 총 ○○○건 109,496,860원의 지원내역을 확인한 결과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의료비로 지원할 수 없는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하거나, 산정금액의 90%만 지원하여야 하나 지원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하여 총 1,338,5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① 과다지급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400,780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338,59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지원제외항목 누락 및 지원율 미적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조회 일부 미실시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관련기관[11]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관련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종사자 모두),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련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표1]과 같이 의료인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성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이 외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표1] 범죄경력조회 대상 및 기준

관 련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 행 일	2012.8.5. (일부개정시행[12] 2023.10.12.)	2014.9.29.	2016.12.30.	2021.6.30.
조회대상	의료인[13], 간호조무사[14], 의료기사[15]	의료인	모든 종사자 (의료인 포함)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12) 조회대상이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서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의료기사로 확대됨(2023.4.11.일부개정 / 시행 2023.10.12.)
13) “의료인”이란 「의료법」제2조(의료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14) “간호조무사”란 「의료법」제80조(간호조무사의 자격)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
15) “의료기사”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보건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근로자를 채용할때는 자격기준에 따라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하여야 하나, 20**년~20**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명(◔과 ○○명, ▣과 ○○명, ◭센터 ○○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등 일부만 조회하거나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2021.6.30.) 이후 채용중이거나 신규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했으며,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2023.10.12.)이후 채용중이거나 신규로 채용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추가로 실시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자격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고,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계법령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 및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16] 혼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72조 및 법 제75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양서류,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간자료인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2021)'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23 Ⅱ.개별기준 제3호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총 ○○○건의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건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인 식품

1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식품위생법」 제46조)
※ 식품공전: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함

분 류	내 용
동물성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
식물성	종류가 다른 식물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
광물성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

접객업소 금속 이물 혼입으로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금속 이물 혼입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2020. 12. 31. 개정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23] Ⅱ.개별기준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일을 처분하였어야 하나,

○개 업소에 대하여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식품접객업소 금속 이물 혼입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하였다.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감경적용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3항 및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여야 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2.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20	40	60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인당)		10	20	30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이상 위반	50	100	150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미만	30	60	90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이상 위반	30	60	90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미만	20	40	60

또한, [별표2] 1.일반기준 다항, 라항에 따라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 *월 ~ 20**. **월까지 건강진단 위반으로 총 ○○○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이 중 ○건은 과태료 처분금액을 10만원 적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며, ○건은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에 따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로 2차 위반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1차 위반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적게 부과하였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 시행규칙 [별표2] 1.일반기준 다항 2)호에 따라 건강진단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별표2] 1.일반기준 라항 2)호에

따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감경기준만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과에서는 건강진단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한 ○○○건에 대해서 확인서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부과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등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업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식품관련 영업자와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한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영업허가 취소 등)에 따라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교육)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자와 「건강기능식품법」 제47조(과태료)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구청장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2023. 4. 25. 개정시행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 1.일반기준 다항, 3)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에서는 20**~20**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자로 통보된 ○○○건 중 ○○○건만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영업장 확인을 통해 폐업·멸실 여부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를 재차 확인 후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개정 시행된 과태료 감경규정을 적용할때는 해당업소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20**년도에 위생교육 미수료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건 중 과태료 체납업소를 제외한 ○○건에 대하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지확인 결과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 관 경 고

제 목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巳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巳과)는 남동구 ㅁㅁㅁㅁㅁ의 안정적인 정착과 ㅁ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남동구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센터(현 남동구ㅁㅁ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 *. *.부터 20**. **. **.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0**. *. **. 「남동구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계획(안)」(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 **.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ㅇㅇㅇ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 및 기술수준,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항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위 선정계획에 따르면 3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배점표’는 첨부서류로 결재를 받아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20**.**.**.부터 20**.**.**.까지 수탁자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20**. **. *. 「남동구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수립 시 당초 선정계획에서 평가항목 *개의 심사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기관의 ㅁㅁ관련사업 운영실적’ 항목과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항목의 심사기준은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변경하였다.

특히, ‘해당기관의 ㅁㅁ관련사업 운영실적’ 항목의 심사기준은 당초 ‘ㅁㅁ관련사업 운영실적’을 심사하는 정량적 평가였으나,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우수사항 및 기여도’을 심사하는 정성적 평가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였다.

또한, ‘해당기관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관련 신청자료를 검토하면서 ◍◍◍가 공고한 서식 외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기타사업운영실적)를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해당기관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항목을 당초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항목의 심사기준도 당초 ‘센터장 및 종사자 채용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였으나 ‘직원의 전문성 및 직원 역량 강화노력’를 심사하는 정성적 평가로 변경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당초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기관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항목과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항목‘을 당초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3개 분야 17개 항목을 재계산하면 선정결과가 바뀌는 등 위탁기관 선정평가 결과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는 공고한 서식으로 제출된 ‘수탁자 신청자료’로는 정량평가가 부적합한 심사기준이 발견되어, 수탁자 신청서 접수 후에 정량평가 적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 회의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개별 발송하는 등 검토할 수 있도록 하

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항목 관련 ◍◍◍가 서식 외에 임의로 제출한 자료를 접수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는 지도점검 사항을 누락하는 등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제외시키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항목은 대부분의 법인이 센터장을 내정하여 지원하는 실정으로 센터장의 공개모집 여부에 대한 심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성적 평가로 변경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수탁기관 신청자료’ 평가서식은 선정계획 수립 당시 심사기준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여 공고했어야 하고,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였다면 선정기준을 수정하여 결재를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한데도 남동구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그대로 두었다.

또한, 신청서 접수 후에 정량적 평가가 부적합하여 정성적 평가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였다면 정성적 평가에 맞게 평가자료를 작성하도록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와 같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울러, 단체가 제출한 신청자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 하였는데도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에서 임의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평가는 변

경한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기관경고] 위탁 운영기관 선정절차 부적정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여 경고하오니, 앞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 ☆☆☆☆보급 보조사업 등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과)는 ☆☆☆ 이용 어르신의 여가 선용 기회 제공 및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과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2.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 ☆☆☆☆보급”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별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로 남동구□□□□□ 소유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을 집행하였고, “◆◆◆◆◆◆◆센터 운영”사업 보조사업자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해야 할 자동차 휴대용 청소기 구입 등을 차량비에서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남동구는 보조사업자가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집행이 부적정했으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지출결의서 미작성 및 지출 증빙자료 미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시행규칙」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같은 규칙 별지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산보고서 서식은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되어있

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하였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 무료급식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교회, ♤♤♤♤교회, ◆◆◆◆◆◆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지출사유 및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또는 지출품의서)없이 사용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제출하는 등 회계처리가 부적정하였다.

또한 20**년 “☆☆☆☆☆☆☆보급”사업과 20**년 “◈◈◈◈◈◈◈센터”운영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하였으나, 남동구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 및 시정 등의 조치없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 지원 보조사업 등 정산심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㔾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㔾과 외 2개 부서)는 「지방보조금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제19조,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하였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 ⊙과, ⌘과에서는 분기별로 집행내역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거나, 지도점검 또는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하였다. 따라서 실적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담당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1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1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재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과에서 시행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중 20** 년 **월 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주행형 CCTV로 단속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확인한 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건은 총 ○○건으로, 이 중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나머지 ○○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닌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현행법상 12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차량 종류별 4만 원 ~ 5만 원으로 잘못 부과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개선] ①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공무원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제대로 숙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 ☆과, ⊙과는 20**년부터 20**년까지 '▽▽▽▽ 복합청사 신축공사' 외 6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6호라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나 설계서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를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르면 사업담당자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과, ☆과, ⊙과의 20**년부터 20**년까지 관급자재 구매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 시 자재선정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 타제품 및 유사 제품과의 비교,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의 제시로 제조· 구매가 불가능한지, 특정회사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나 우수조달제품 또는 성능인증 제품의 사유로 특정제품의 규격과 인증번호를 명시하여 수의1인견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규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20**년 '★★★★ ★★ ★★★★ 조성 사업(3단계)'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를 위해 규격·가격동시 입찰 계약으로 규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연출장비를 구매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18]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고, 평가

3)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차”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과의 20**. *. **. ✶✶✶✶ ✶✶ ✶✶✶✶ 조성사업(3단계) 관급자재(경관연출장비) 구매 제안서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위원회 구성을 위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 다른 시·도의 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 공무원(○명)으로만 구성하였으며, 평가의 보안 유지를 위해 평가위원에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보안각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 개최 후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등 규격평가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규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통보 요구

제　　목 **⊙⊙⊙⊙⊙⊙⊙ 관제기 정비 조달구매 계약 이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20**년 **⊙⊙⊙⊙⊙⊙⊙**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간제 운영 요청으로 기존의 정기권 운영에서 시간제·정기권 혼용 운영을 위해 『**⊙⊙⊙⊙⊙⊙⊙** 관제기 정비에 따른 운영·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관제기 정비에 필요한 주차관제장치(5종 7대)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구매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달사업법」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1항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1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달사업법」 제21조 제7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19)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법 제13조제2항의 대리점 등 시중에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되어 있다.

「지방계약예규」 제9장 제5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하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예규」 제9장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①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20]의 요령으로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고, ②물품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과에서 계약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검사한 내역과 물품의 설치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인식기가 분할납품요구서(계약서)의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장에 설치된 차량인식기의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규격서에서 제시한

20)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STEEL 재질의 외형이 없고, 부분품에 대해서도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전광판은 ○대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 물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급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감사기간 내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규격을 확인한 결과 나라장터 공급 물품과 규격이 다른 물품이었다.

계약업체인 □□□□(주)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중 차량인식기 카메라와 차량차단기의 차단바 위치가 맞지 않아 차량인식기 내 카메라 위치로는 차량번호 인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장 상황에 맞춰 물품을 변경하여 제작·설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과는 계약서와 다른 물품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 변경(설계변경 포함) 등을 검토한 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동등이상의 물품을 구매 하거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계약업체가 납품한 물품 그대로 현장 점검을 하고 물품 검사(수) 조서에 '합격판정'으로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등 물품 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조달사업법」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 물품을 구매하였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차량인식기의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비슷한 규격의 다수공급자계약업체 3개사의 물품 가격을 조사해보니 평균가격은 5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바, 이는 계약한 물품의 품대와 견주어 볼때 대략 15백만 원(총 ○대)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현저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 E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조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계약에 관하여 분할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계약업체에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 **제조 구매 입찰 계약 이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4시간 상시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입찰을 통해 ▦▦▦▦▦▦▦▦▦▦ 물품을 구매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고,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영 제16조 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21]의 서류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제조 · 구매 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예규」 제15장 제5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하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예규」 제15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계약담당자는 검사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22]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물품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과의 20**년과 20**년 ▦▦▦▦▦▦▦▦▦▦ 구매 계약서류와 납품계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설치된 물품은 계약업체인 ㈜■■와, ♤♤♤♤(주)의 것이 아닌 ㈜☆☆☆☆☆의 제품이었다.

1) 20**년도 ♤♤♤♤(주)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

㉠과는『▦▦ ▦▦ ▦▦▦ 구입 및 확대 운영』사업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에 과업 참가자격으로 ◬◬◬◬측정기 및 ◫◫채취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 모니터링 및 ◫◫ 채취 프로그램에 연동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협약 업체인 ㈜☆☆☆☆으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의 규격을 작성하여 ☆과에 물품 계약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물품의 계약 서류와 납품계를 확인한 바 ♤♤♤♤㈜는 계약체결 시 기술지원협약 업체인 ㈜☆☆☆☆과 체결한 기술지원확약서와 물품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계약 이행 시에는 ▦▦ 모니터링 및 ◫◫ 채취 프로그램과

22)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의 데이터 연동 및 호환성을 이유로 자사의 제조 물품이 아닌 ㈜☆☆☆☆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그리고, ㉠과는 ♤♤♤♤㈜에서 납품한 ㈜☆☆☆☆의 ***-**** 물품을 검사하면서 물품 검사(수) 조서에 “물품의 수량, 계약 규격 및 외형, 구성품 부착 여부 등 모두 일치”로 작성하여 ☆과에 물품 검수 결과를 제출하는 등 물품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2) 20**년도 ㈜▣▣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

20**년 **월에 ㈜▣▣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물품의 계약 서류와 납품계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상 ▦▦ 모니터링 및 ◫◫ 채취 프로그램 연동에 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었으나, ◬◬◬◬측정기 및 ◫◫채취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등 과업 참가자격 기준은 20**년도와 같았다. 시스템 구성 및 최소 규격 또한 웹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20**년도와 구매 수량만 다를 뿐 동일하였다.

그리고 계약업체인 ㈜▣▣에서도 ◬◬ 모니터링 및 ◫◫ 채취 프로그램과의 데이터 연동 및 호환성을 이유로 ㈜☆☆☆☆의 제품을 납품하였고, ㉠과는 20**년도와 같이 정상 납품으로 하여 물품 검사를 하는 등 물품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 F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 □□□□ □□ 카메라 제조 구매 입찰 계약 이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우범지역 내 범죄의 사전 예방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20**년 □□□□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 카메라(회전형 등 3종 44대)를 물품 수의견적제출 입찰로 구매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고,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영 제16조 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23]의 서류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제조 · 구매 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예규」 제15장 제5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하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예규」 제15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23)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검사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24]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며, 물품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에서는 『20**년 □□□□ □□□□ □□』 사업 수행을 위해 시방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보안용카메라 또는 영상감시장치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방서와 함께 ☆과에 물품 계약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물품의 계약 서류와 납품계를 확인한 바 ㈜♤♤♤♤♤는 보안용 카메라 제조 업체가 아닌 영상감시장치(컨트롤러류)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보안용카메라에 대한 물품 납품 이행이 어려워 자사가 직접 제조·생산한 물품이 아닌 동등 이상이라 자체 판단한 타사 제품인 ⊡⊡⊡⊡의 ⊡⊡⊡⊡ 제품을 납품하고 물품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과는 ㈜♤♤♤♤♤에서 납품한 ⊡⊡⊡⊡의 ⊡⊡⊡⊡ 제품을 검사하면서 물품 검사(수) 조서에 “물품의 수량, 계약 규격 및 외형 모두 일치”로 작성하여 ☆과에 물품 검수 결과를 통보하는 등 물품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4)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 G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위법건축물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및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위법건축물 등 취득세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

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동구 ◑과에서는 무단증축 및 불법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붙임] “위법건축물 등 취득세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ㄱ동 **번지 등 **개소의 취득세 등 56,071,030원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였다.

3. 취득세 취득가액(농지보전금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서 대상 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신·증축 시 지방세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가액을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동구 ◑과에서는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ㄱ동 ***번지 등 **개소의 취득세 등 19,082,810원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였다.

4. 취득세(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

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2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 이내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제2호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 ◑과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인 경우 실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ㄴ동 ***번지 제****호 등 *개소의 취득세 등 39,639,070원을 부과 누락하였다.

5.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

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동구 ◑과에서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취득세를 경감받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동안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ㄴ동 **번지 등 *건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 36,179,000원을 과세 누락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위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150,972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재산세(사권제한 토지 감면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지에 소재하는 부동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및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권제한토지 재산세 감면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3종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등이 해당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

물의 부속토지 등이 포함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효력을 잃은 토지에 대하여 [붙임1]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와 같이 실효고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남동구 ◑과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실효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취소하고 「지방세법」 제106조에 의거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고시된 남동구 ㄷ동 **번지 등 **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 *건 41,241,060원을 과세 누락하였다.

3. 위법건축물 등 재산세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법」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동구 ◑과에서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확인된 미사용승인 및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 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위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ㄹ동 **번지 등 **건에 대한 재산세 등 21,149,470원을 부과 누락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한 재산세 등 62,39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를 세율로 적용하여,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매년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21년도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지방세법」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동구 ◑과에서는 관내 사업장 중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현황을 파악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과세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 등 **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건, 8,236,250원을 과세 누락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사업소분 주민세 등에 대하여 8,236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지방세징수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수입 확보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에서 납세자가 제32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지방세수입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조제1항에서 납세자 관리대장에는 납세자의 재산 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동구 ㉠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를 기초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관계사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명, 체납액 45,137,660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지 않아 지방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지방세 체납액 45,138천 원에 대하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속히 압류하여 채권 확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동, ◭동, ◬동, ☆동, ✣동, ◪과, 目과, ✹동, ✪동, ◧과, ✦동,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함께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전통지한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감경되기 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ㅁ동 등 **개 부서에서는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어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 등 *명, 과태료 12,675,0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본 부과되지 아니한 과태료 12,675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평생학습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 ◎과는 20**년부터 20**년 기간 중 남동구 ◇◇◇ 건물 ○층 및 ▲층 공간을 ㈜◑◑에게 사용허가하여 카페 및 사무시설, 생산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다.

2.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평생학습관 본래 용도 사용 저해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한편 남동구 ◇◇◇은 남동구의 공유재산이다.

따라서 남동구는 ◇◇◇ ▲층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시 평생학습관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장애가 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는 ◇◇◇ ▲층에 총***㎡의 생산시설을 ㈜◑◑에게 20**. **. **. 사용허가 하였다.

이후 ⊙과에서 수립한 20**. *. **. 계획서에는 ㈜◑◑의 생산시설에 대한 ◇◇◇ 사용허가로 인하여 평생교육 본연의 공간 활용이 저해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생산시설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남동구는 20**년~20**년 기간 중 ㈜◑◑의 생산시설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한 실적이 없었다.

3. 행정재산 사용허가 후 원상복구 이행 조치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20**. *. **.자로 만료되어 퇴거한 ㈜◑◑의 ▲층 생산시설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20**. *. **. '남동구 ◇◇◇ 공간 효율성 제고를 위한 ㈜◑◑ 생산시설 복원(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예산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주의] 향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기 바라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 시 사용자가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부과 및 사용허가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 ☆과는 공유재산의 관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회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에서 납부한 공제금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부과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동구는 공유재산으로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억원 이상의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발생되는 배상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남동구는 20**년 종합감사 시 공유재산 사용자 및 대부계약자에게 공제금을 미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는 20**년도에는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25]만 하였을 뿐 전체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또는 대부계약자에게 공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년은 ○과에서 사용허가한 *개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도 손해보험 또는 공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25) 문서번호 : ☆과-○○○○(20**.*.**.) 20**년 인천시 종합감사 공유재산부문 지적사항 전달 및 추후 관리 철저 안내

3.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리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남동구 ◇과는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ㅂ동 ***번지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 외 *개 보훈단체에게 20**. **월부터 사용허가를 해오고 있으며, ◈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ㅅ동 ***-*번지에 대하여 目目에게 사용허가를 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20**.*.*.에 거쳤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ㅂ동 ****-*번지의 사용자 ◎◎ 외 *개 보훈단체에게 20**.**.**.~20**.*.**.까지 해당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없이 사용하게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년은 사용자에게 공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남동구 ◈과는 ㅅ동 ***-*번지의 사용자 남동구 目目에게 20**.*.*.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별도의 사용허가는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하게 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시정] ① 20**년부터 20**년 기간동안 공유재산 사용자 등에게 미부과한 공제금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사용자 등에게 공제금을 미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ㅅ동 ***-* 행정재산을 사용중인 남동구 目目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관리업무가 소홀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있다.

2. 계속비사업조서 작성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등) 및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예산안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8. 성과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10. 명시이월 명세서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5.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6.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7. 성인지 예산서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따라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이하 “계속비사업조서”라 한다)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

3. 계속비 이월 의회 의결 시점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르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하며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본예산안에 첨부함이 원칙이며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생략할 수 있어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가 첨부되는 시점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20**년~20**년 기간 동안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 다음연도의 계속비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었으며, 다음연도 본예산안에는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의결받은 계속비에 대하여 계속비조서를 첨부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계속비 이월 시점이 법이나 지침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동구 의회심의 절차상 정리추경에서 계속비 이월이 먼저 다뤄지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중복 심의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이월액 산정과 의회심의 절차를 고려하여 정리추경에서 계속비 이월조서에 대한 심의(의결)받고 의결받은 계속비조서를 본예산안에 첨부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의결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서도 본예산안에 계

속비사업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볼 때,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례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첨부하여 의결을 받고 본예산안에는 첨부만 하는 방식이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다음연도 본예산안에 반영될 신규 계속비 사업이 의회의 의결 전에 전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선 반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주의] 계속비사업 이월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업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예산의 이월 운영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여 계속비 이월 의회 의결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시정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를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조문별로 해설하고 있다.

2. 퇴직 예정 공무원 일률적 격려금품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규칙 [별표 1] 직무활동 범위 중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

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고,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4. 업무추진비(203목)’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을 위한 계획은 수립하였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는 없이 30만원씩 **명에 대하여 일률적 금품 지급을 하였으며,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3. 온누리상품권 구입 후 증빙자료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과는 20**년부터 20**년 설 및 추석 명절 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구입한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는 내용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규칙 [별표 1] 직무활동 범위 중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훈령 [별표 2] 집행기준 중 ‘4. 업무추진비’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위하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 증빙문서에는 온누리상품권 구입 영수증과 그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의 사진(전체 사진으로 세부 품목 확인은 불가)은 첨부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 목록과 이에 대한 물품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구입한 상품의 정확한 품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품권 전액의 지출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일부 행사 시에는 계획서 상 전달 예정 되어있던 사회복지시설의 물품 인수증이 없어 구입한 물품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4. 일반운영비 해당 지출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별표 2]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목)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사운영비(201-03)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남동구는 예산집행 시 훈령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적합한 예산과목에서 각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연하장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지출 *건과 환영리셉션 식사비용 등 행사운영비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5. 여비 해당 지출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규칙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상 관외출장 시에 규정에 따라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여행에 따른 경비는 지급받은 여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해당 집행사항이 직무수행 및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사항인지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타시도 행사참석을 위해「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외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간식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 또한 출장 중 구입한 간식이 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자택근처 업무추진비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훈령 [별표 2] 집행기준 중 '4. 업무추진비'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자택근처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장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건 2,249천원을 자택 근처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7.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기관경고] 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감사규칙」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관경고하오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받고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대상사업에 집행한 금액 946천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는 20**년부터 20**년까지 ○동 ***번지 외 *개 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영구시설물 등 축조한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 체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공유재산법」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대부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미 무단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해당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신청 시에는 공유재산 부지인 ㅈ동 ****번지와 인접한 사유지인 ㅈ동 *** 외 *필지 안에 가설건축물을 배치할 것을 계획하였고 사유지 공동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축조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배치 계획과는 다르게 공유재산 부지인 ㅈ동 ****번지를

침범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을 배치하였고 이는 공유재산 소유자(관리자)인 남동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가설건축물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남동구 ☆과는 공유재산인 ㅈ동 ****번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출장복명서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점유면적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내었으며 이후 원상복구 명령은 없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에 건물이 축조되어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3. 변상금 부과 및 납부 전 대부계약 체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동구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

구 명령 등과 함께 변상금 부과 및 징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은 없이 대부계약 체결로 유도할 것이라는 출장복명서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변상금만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변상금 부과 또한 부과를 한 후 징수를 하기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르면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며,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한편 ㅇ동 ****번지 무단점유자의 경우에는 무단점유 기간(‘**. **. **. ~ ‘**. *. **.)에 대하여 변상금을 ‘**. *. **. 부과하였고 ‘**. *. **.까지 납부기한이었으나 ‘**. *. *.에 변상금을 연체하여 납부하였다.

따라서 남동구는 연체한 변상금에 대하여 연체료 및 변상금을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지만 남동구는 상기인과 해당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변상금 연체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변상금을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4. 공유재산 대부계약 수의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제2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 중 대부계약 신청 당시 토지의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는 일반재산을 대부하면서 내부방침 없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ㅈ동 ****번지 외 *건은 출장복명서의 출장의견만을 토대로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ㅇ동 ****번지의 *건은 출장복명서 상에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수의계약을 하였다.

한편 출장복명서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ㅈ동 ****번지가 5천만원 이하 재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해당 공유재산의 재산가격이 619,035천원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주의] ① 향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조치 및 변상금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한 무단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유재산 수의 대부계약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교부 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는 기업인 단체의 교류지원을 통하여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 및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 및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에 보조금을 매년 교부하였다.

2. 보조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남동구는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남동구는 보조사업자 (사)◎◎로부터 신년회, 송년회, 정기총회, 체육대회 등의 세부사업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사)◎◎의 신년회, 송년회, 정기총회 등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에도 남동구 ▥과는 (사)◎◎의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및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남동구 ▥과는 (사)◎◎의 사업계획서 상에 총회, 각종회의, 정례회의, 보조사업자의 홍보물 제작 등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인 경제단체 교류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없는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성격의 집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사업자의 운영비를 위하여 보조금이 집행되었다.

3.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산보고서 서식은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보조사업자 (사)◎◎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집행내역에는 모든 지출에 대하여 내부결재 및 계획수립 없이 집행되어서 해당 집행사항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간담회에 따른 식대비 지급 또한 회의내용, 참석자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식대비가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출결의서에 세부 집행 증빙서류 없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보조금을 정산하였다.

4.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보조금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동구 ▥과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파악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보조사업을 수행하는지 점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보조사업자가 20**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ㄱ시 MOU 체결’이 없었고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5. 보조금 현금인출 후 사후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는 보조사업자인 (사)◎◎가 각 분과별 활동비를 위하여 현금을 일괄 인출하여 회원 대표 *명에게 지급하고 회원대표 *명이 개인카드로 집행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에 따라 남동구 ▥과에서 20**. **월 보조금 사업집행 특별 지도·점검 시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분과활동 증빙자료도 미첨부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첨부하도록 시정요청 하였지만 행사사진과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만 첨부하였고 일부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 보이는 목록자료만 첨부하는 등 미흡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6.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따라서 남동구 ▥과는 보조사업자가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강사료에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세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이를 징수하도록 하지 않았다.

7.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 ▥과는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확인 소홀 및 보조금 현금인출 후 사후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20**년 **월에 보조금 집행서류에 대해 특별 지도점

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조치 하였으며, **년도 분과활동비는 **년도 사업계획에 배제하였고, **년도는 사업변경 시 사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있으며 20**년도부터는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친목도모의 행사성 식대는 편성 배제하고 남동구와 상생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구성하였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8. 검토결과

그러나 20**년~20**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사항도 없었고 정산시 별도의 지적사항 없이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0**. **월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보조금 현금인출 후 사후정산하는 형태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미첨부시 환급조치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증빙서류로 부족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등 보조금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20**년에는 분과활동비를 사업계획에 배제하였다고 하였으나 □분과 신설모임에 따른 간담회비 등의 집행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식대비, 보조사업자 홍보용 책자 제작 등 운영비성 경비를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주의] ①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운영비 등 보조사업에 부적합한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③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및 사업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없이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와 업무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目과, ㊍과, ◩과, ①실,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는「지방계약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남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1. 정량평가 시 수행실적 인정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실적제한 또는 실적평가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동구 目과 등 4개 부서는 '◉◉ 경관개선사업' 등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정량적 평가항목의 수행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수행실적만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까지 포함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게 평가업무를 실시하였다.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에서 통보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에 따르면 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부규정 등으로 선정된 위원 중 2/3 이상 위원만 출석한 경우 위원 수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서를 평가하는 잘못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에 남동구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건의 용역에 대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이 7명 미만인데도 예비 평가위원 추가 연락 및 위원회 일정 변경 등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확

보를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제안서를 평가하였다.

3.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 미공개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는 20**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20**년 남동구 △△△ 용역' 등 *건은 평가결과 세부 평가점수만 공개하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 경관개선사업' 등 *건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시 수행실적 인정 범위 준수, 평가위원 최소 인원 충족,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한 전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미디어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이하 “◐과”라 한다)는 소래지역 주변과 어우러지는 미디어아트와 최첨단 영상매체를 통한 야외 콘텐츠 공간 조성을 위해 ‘✶✶✶✶ ✶✶ ✶✶✶✶ 조성사업(1단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야간경관 미디어콘텐츠 제작 용역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하였다.

◐과는 입찰공고를 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자 재공고를 하였고, 재공고도 무응찰로 유찰되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비, 사업내용 등의 계약조건에 응하는 업체가 없자 입찰 참가 면허를 보유한 동 사업의 관급자재(미디어 프로젝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정량평가 증빙자료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요령에 따르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관련하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

입찰공고 시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참여인력 현황에 기재한 총괄책임자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 및 학위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과는 제안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총괄책임자의 경력증명 및 학위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제출한 착수계에도 용역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정량평가 시 수행실적 인정 기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주의사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실적제한 또는 실적평가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는 본 용역의 추정가격이 70,400천원으로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용역에 해당함에도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3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의 유사 용역 실적으로 제안하면서 제안요청서 등에 사업비 대비 과도한 실적금액 제안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유사용역 실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관련 용역 완료한 실적만 인정한다고 하여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까지 포함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지침 준수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서류 검토 및 평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다수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위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目目目目축제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이하 “㉮과”라 한다)는 目目目目 관광자원의 축제 콘텐츠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20**년 제□□회(이하 “제□□회”라 한다) 및 20**년 제◎◎회(이하 “제◎◎**회”라 한다) 目目目目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축제를 추진할 민간기획사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目目目目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시행하였다.

공고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가 결과 순위가 1위인 업체와 협상을 통해 행사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추진하였다.

1. 정량적 평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8항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 4. 제안서의 평가요령에 따르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하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심사기준대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제□□회 용역의 경우

20**. *. **. 공고한 「제□□회 인천▤▤▤▤축제 행사대행 용역」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량적 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은 전문인력 참여현황(6점), 사업수행 실적평가(6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4점), 경영상태(4점)이며 총 배점은 20점이다.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의하면 첫 번째 평가항목인 전문인력 참여현황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인원수에 따라 6점~0점을 부여하되, 제안서 제출 업체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로 부서명 및 담당업무가 명기된 해당 업체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4대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평가항목인 사업수행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억원 이상의 단일수주건 누계 실적 금액에 따라 6점~0점을 부여하되,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민간기관 용역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대리인의 확인필)를 모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출 서식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별지 2-2] 용역 수행(참여) 전문인력 현황의 경우 총괄책임자 및 중간관리자는 관련분야 근무이력(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2-4] 사업실적 증명서(개별)의 경우 이행 실적란은 실적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회 용역 입찰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한 *개 업체의 정량평가 증빙자료 및 ◍과 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점수 반영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누락 하였는데도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 평가항목인 전문인력 참여현황 평가 시, △△과 ◆◆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부서명만 있고 담당업무가 미기재 되어 있음에도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평가항목인 사업수행 실적평가 시, ♧♧의 사업수행 실적 중 민간기관 실적의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실적에서 제외한 후 평가하고 4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여 평가한 후 6점을 부여하였다.

△△의 사업수행 실적 중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서 실적에서 제외한 후 평가하고 4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여 평가한 후 6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과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다시 평가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 제◎◎회 용역의 경우

20**. *. **. 공고한 「제◎◎회 目目目目축제 행사대행 용역」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량적 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은 전문인력 참여현황(6점), 사업수

행 실적평가(6점), 신인도(3점), 경영상태(5점)이며 총 배점은 20점이다.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의하면 첫 번째 평가항목인 전문인력 참여현황은 본 사업 참여 전문인력의 인원수에 따라 6점~3점을 부여하되, 제안서 제출업체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로 부서명 및 담당업무가 명기된 해당 업체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4대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평가항목인 사업수행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2억원 이상의 단일수주건 누계 실적 금액에 따라 6점~3점을 부여하되,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민간기관 용역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대리인의 확인필)를 모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출 서식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별지 2-2] 용역 수행(참여) 전문인력 현황의 경우 총괄책임자 및 중간관리자는 관련분야 근무이력(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2-4] 사업실적 증명서(개별)의 경우 이행 실적란은 실적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회 용역 입찰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한 *개 업체의 정량평가 증빙자료 및 ◍과 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점수 반영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누락 하였는데도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 평가항목인 전문인력 참여현황 평가 시, △△과 ◑◑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부서명만 있고 담당업무가 미기재 되어 있음에도 서류 확인을 소홀

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평가항목인 사업수행 실적평가 시, △△의 사업수행 실적 중 민간기관 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서 실적에서 제외한 후 평가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실적누계에 포함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의 사업수행 실적의 경우 모두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수행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실적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후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3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여 평가한 후 6점을 부여하였다.

◑◑의 사업수행 실적인 '제**회 ▤▤▤▤축제(102백만원)'와 '제*회 ◇◇전시회(150백만원)' 2건 모두 단일수주 실적 2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후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3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여 평가한 후 4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과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다시 평가하면 두 업체의 종합평점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우선협상대상 순위는 변경되지 않았다.

2. 용역 참여 전문인력 축소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제□□회 및 제◎◎회 용역의 제안요청서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9. 제안서의 효력에 의하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안요청서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1. 기타 유의사항에 따라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제안한 내용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제안한 용역 참여 전문인력은 계약조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지 않은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착수신고서 내용 중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제안서에서 제안한 용역 참여 전문인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제□□회 용역의 경우

제□□회 용역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이하 “△△”이라 한다)은 20**. *. **. 제안서를 ◍과에 제출하였고, 제안서 내용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의 용역 수행(참여) 전문인력 현황에 **명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의 전문인력 참여현황 평가항목에 6점(본 사업 참여 전문인력 7명 이상에 해당)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20**. *. **. 계약 체결 후 20**. *. *. △△이 제출한 착수계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는 *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과는 착수계 접수 시 관련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고 그 결과 계약조건의 일부인 전문인력 참여 현황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보완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다.

또한, △△은 행사 준비단계부터 실제 투입인력이 *명임에도 제안서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하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부당한 평가 점수를 받았다.

2) 제◎◎회 용역의 경우

제◎◎회 용역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이하 “△△”이라 한다)은 20**. *. **. 제안서를 ◍과에 제출하였고, 제안서 내용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의 용역 수행(참여) 전문인력 현황에 11명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의 전문인력 참여현황 평가항목에 6점(본 사업 참여 전문인력 7명 이상에 해당)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20**. *. **. 계약 체결 후 20**. *. **. △△이 제출한 착수계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는 *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과는 착수계 접수 시 관련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계약조건의 일부인 전문인력 참여 현황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보완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다.

또한, △△은 실제 투입인력이 *명임에도 제안서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하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부당한 평가 점수를 받았다.

3.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동 예규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과는 제□□회 및 제◎◎회 용역 우선협상대상 1순위였던 △△과 협상 완료 후 ☆과에 계약 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협상합의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를 각각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공문에 첨부된 협상합의서와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는 제□□회 및 제◎◎회 용역의 계약문서에 해당하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과업관리 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및 전담조직 미구성 관련

제□□회 및 제◎◎회 용역 계약문서인 「과업지시서」 Ⅱ. 과업의 세부내용 7. 과업수행 가. 일반사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제□□회 ㅖㅖㅖㅖ축제” 및 “제◎◎회 ㅖㅖㅖㅖ축제”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과업관리 책임자는 타 공연·축제 겸직을 금지하였다.

또한, 제□□회 및 제◎◎회 행사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이 충분히 배치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프로필, 비상연락체계)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였다.

가) 제□□회 용역의 경우

△△이 20**. *. *. ㉥과에 제출한 착수계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하면 인력은 총 *명이며, 이 중 연출 총괄을 담당하는 H(대표)가 과업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 일반사항에 따라 연출 총괄 담당 H는 타 공연·축제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수행한 타 지자체의 공연·축제 중 제□□회 용역의 과업기간과 일정기간 겹치는 행사의 착수계 내 인력 투입계획을 확인한 결과, H가 타 공연·축제의 과업관리 책임자를 겸직하였고, 제□□회 행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제출해야 하는 전담인력 프로필, 비상연락체계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계약상대자의 과업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는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제◎◎회 용역의 경우

△△이 20**. *. **. ㉥과에 제출한 착수계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하면 인력은 총 *명이며, 이 중 연출 총괄을 담당하는 H(대표)가 과업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 일반사항에 따라 연출 총괄 담당 H는 타 공연·축제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수행한 타 지자체의 공연·축제 중 제◎◎회 용역의 과업기간과 일정기간 겹치는 행사의 착수계 내 인력 투입계획을 확인한 결과, H가 타 공연·축제의 과업관리 책임자를 겸직하였고, 제◎◎회 행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제출해야 하는 전담인력 프로필, 비상연락체계 등을 제출

하지 않는 등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계약상대자의 과업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는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 미이행 관련

제□□회 및 제◎◎회 용역의 「과업지시서」 Ⅱ. 과업의 세부내용 7-다.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일까지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인 △△이 제□□회 및 제◎◎회 용역의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과는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회 용역의 경우에는 남동구와 △△이 20**. *. **. 합의하여 날인한 「협상합의서」에서 주관기획사는 계약 체결 이후 축제운영 전반에 대한 상호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정된 세부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20**. *. **.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주관기획사인 △△은 미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과의 지도·감독 또는 제출독촉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4. 과업변경 부적정에 따른 계약질서 문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와 보고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동 예규 14장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업무 수행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내부방침을 득한 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정당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고, 동 예규 14장 제2절 계약의 체결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아울러, 제□□회 및 제◎◎회 용역의 「과업지시서」 Ⅱ. 과업의 세부내용 7. 과업수행 다.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역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변경을 완료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과업을 이행하거나, 발주부서가 내부방침 후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문서로 지시하고 계약상대자가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 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그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한 후 변경 전 우선용역 이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후 과업변경 시기, 변경 과업 검토·지시 등이 문서로 보완 되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제□□회 용역의 경우

◍과는 제□□회 용역을 추진하면서 20**. **. **.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과업변경을 시행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 경관조명 과업의 운영 기간 연장 및 둘레길 포토존 제작, SNS홍보, ◇◇◇홍보관 전시관 조성 등의 추가 과업 시행이었다.

예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면 과업변경은 계약상대자인 △△이 ◍과에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과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 후 시행하거나,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과가 △△과 변경시기 등을 문서로 명확히 정

하고 나서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한 다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회 용역의 과업변경 과정을 확인한 결과, 과업변경이 과업 이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과는 △△과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주된 과업 완료 후 과업변경을 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내역 변경 관련 서류 등도 제출받지 않았으며, 추가된 과업의 단가가 적정한지 혹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 과업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서면 검토도 하지 않는 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절차를 위반하고 계약 과업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2) 제◎◎회 용역의 경우

◍과는 제◎◎회 용역을 추진하면서 20**. **. *. '관련 변동사항 반영'이라는 명목만으로 과업변경을 하여 사업비를 33% 증액하였다.

예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면 과업변경은 계약상대자인 △△이 ◍과에 변경서류를 제출하고 ◍과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 후 시행하거나,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과가 △△과 변경시기 등을 문서로 명확히 정하고 나서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한 다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회 용역의 과업변경 과정을 확인한 결과, 과업변경이 과업 이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과는 △△과 협의하여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하였다.

또한, 과업 완료 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의 33%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내역 변경 관련 서류 등도 제출받지 않았고, 변경내역 중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과업 내역과 그 사유, 새로 추가되는

과업과 그 사유 등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집행내역과 단가, 예산만 나와 있는 변경 전·후의 산출내역만으로 과업변경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과업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항이 반영되거나 과도한 증액사항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변경된 과업단가가 적정한지 등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서면 검토 하지 않는 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결과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며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는 등 계약 절차를 위반하고 계약 과업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5. 업무담당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A은 20**. *. *.부터 20**. **. **.까지 남동구 ◍과에서 실무담당자로, B은 20**. *. *.부터 20**. **. **.까지 남동구 ◍과에서 실무책임자로 제□□회 및 제◎◎회 ▤▤▤▤축제 업무를 추진하였다.

축제업무를 추진할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하면 지방계약법,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정한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켜선 아니 되고, 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심사기준만 적용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후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를 이행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문서 내용 이행 여부, 업무처리, 관련서류 제출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추진 중 과업변경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업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서면 검토한 후 과업 이행 전에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어 과업 이행 후에 과업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과업 이행 전에 계약상대자와 변경 시기 등을 문서로 명확히 정한 후 우선 과업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과업 이행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내역별 증감된 단가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서면으로 검토한 후에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가. A의 경우

그러나, A은 제□□회 및 제◎◎회 目目目目축제 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발주부서에서 담당한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 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했음에도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인지하고 못하였고,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수산출에 문제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업무를 태만하게 진행한 결과, 제□□회 및 제◎◎회 모두 평가한 업체 중 일부업체들의 평가점수가 변동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회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 순위 3위 업체를 1위로 잘못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접수하면서 서류검토를 태만하게 하여 당초 업체가 제안한 전문인력 투입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인원

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못한 채 접수 확인 서명을 하였고, 실무 담당자임에도 과업지시서 등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관리 책임자 겸직 사항을 위반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에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내용을 미이행하고 불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감사기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시정·독촉·주의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과업변경을 과업완료 이후에 시행하면서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우선과업의 이행을 지시하였으며, 과업변경의 적정성 등을 서면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과업변경을 하여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는 등 계약 절차를 위반하고 계약 과업 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B의 경우

B은 제□□회 및 제◎◎회 ▤▤▤▤축제 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정량적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검토하고 평가를 태만히 진행하고, 계약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업변경 업무 등에 대해 검토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관련한 A의 기안 문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였다.

6. 관계기관(관련자) 등 의견

가. 정량적 평가 부적정 관련

경위서 의견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한 사항은 보완요청하여야 하나, 당시에 해당 점수산출에 문제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보완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확인서 의견으로 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의 경우 주최가 인천광역시여서 공공기관 수행실적으로 판단하여 실적증명서만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용역 참여 전문인력 축소 부적정 관련

경위서 의견으로 제안서 제출 및 평가시 투입인력을 *명 이상으로 제출하여 6점을 받았으나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력을 *명으로 기재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서 축제 전체 전문인력이 아닌 계약업무에 관련한 사무실 직원을 단순기재하여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보완조치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확인서 의견으로 보완요청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제안서 평가 점수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실제 용역업체가 *명의 직원만으로 축제운영을 하지 않으며 사무실 직원을 단순기재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과업변경 부적정 관련

경위서 의견으로 용역업체의 과업변경 검토요청없이 사업부서의 '변동사항 반영' 명목만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한 부분은, 축제 개최시까지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와의 꾸준한 협의 끝에 최종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과

업변경 전에 별도의 공문서를 통해 근거를 남겨 놓았어야 하나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답서 의견으로 과업변경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 했던 것 같으나 증빙자료는 따로 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하였다.

7. 관계기관 등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가. 정량적 평가 부적정 관련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 내용이 미비한 것은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재직증명서와 원본대조필이 없는 민간기관 사본 용역수행실적, 이행실적란에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지 않은 실적증명서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전문인력 보유상태 확인을 위해 부서명과 담당업무가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라고 하였고, 민간기관 용역수행실적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이 찍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실적증명서의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모두 업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완이 안될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점수 산출에 문제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보완조치 하지 않았다는 위 관서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민간기관 용역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대리인의 확인필)를 모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위 관서가 공공기관 수행실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수행 실적을 보면 모두 주최는 공공기관(인천광역시)이지만 주관은 민간기관으로 용역 발주 및 실적증명서 발급 또한 해당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 발주하고 민간기관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용역은 민간기관 용역수행실적에 해당하므로 제안요청서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대리인의 확인필)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하여 해당 실적을 공공기관 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하였다는 위 관서의 주장은 제안요청서 심사기준대로만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업체의 평가 점수가 바뀌게 된 결과를 초래한 사항으로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용역 참여 전문인력 축소 부적정 관련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제안한 용역 참여 전문인력은 계약조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지 않은 한 변경이 불가하며,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제안한 전문인력 그대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과는 이를 확인 후 착수계를 접수해야 함에도,

업체가 *명 이상으로 투입하겠다고 제안하여 점수를 받은 후, 착수계에는 단순 사무실 직원 *명만 기재했음에도 ㉦과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착수계에 접수확인 서명을 한 사실은 계약문서 검토 및 이행 확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증거이다.

다. 과업변경 부적정 관련

축제 개최시까지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와의 꾸준한 협의 끝에 최종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해서 과업 완료 이후에 과업변경을 하였더라도 과업 이행 전에 업체와 협의 후 문서로 변경시기를 정하여야 했고, 과업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문서로 검토 한 후에 변경을 완료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검토는 했지만 별도의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판단

제□□회 및 제◎◎회 ▤▤▤▤축제 업무를 하면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기준이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미이행, 관련서류 미제출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등 담당 업무를 태만하게 한 행위 및 계약절차를 미준수하고 과업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B은 제□□회 및 제◎◎회 ▤▤▤▤축제 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실무담당자 A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징계] 제□□회 및 제◎◎회 目目目目축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위 A을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실무담당자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위 B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대행 용역 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개선 요구

제　　목 **계약업무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8조(문서의 기안)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서 서명 및 행정전자 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행정업무 규정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업무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행정업무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표1 본청의 사무전결 사항] 중 ☆과 11.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항목을 보면, 입찰공고 및 결과보고, 지명경쟁입찰 지명통지 등 계약관련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1) 본청의 사무전결 사항

[☆과]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11.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가. 입찰공고 및 결과보고(적격심사)						
(1) 1억초과 공사, 5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구입	기안			○		
(2) 1억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구입	기안		○			
나. 지명경쟁입찰 지명통지	기안		○			
다. 검사 및 검수 입회명령	기안		○			
라. 공사, 용역, 물품 착·준공계 통보	기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기안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월부터 20**.**월까지 신규계약 체결 *,***건(공사 ***건, 용역 ***건, 물품 ***건) 및 변경계약 *,***건(공사 ***건, 용역 ***건, 물품 ***건) 등 총 *,***건에 대하여 문서의 기안 및 결재를 생략한 채 처리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기관경고] 계약사무 처리 시 결정권한이 없는 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문서의 기안 및 결재를 생략하여 의사결정을 한 사항으로 기관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여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여 계약 사무 시 전결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국,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통한 업체 선정 등의 계약업무와 건설공사 발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이하 “고시”라 한다)을 근거로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공 건설공사 설계용역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미반영

발주청은 고시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시 설계자로 하여금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고시 시행일(20**.*.**.)부터 20**.**월까지 발주한 총 **건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중 **건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시 공사기간 산정 관련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용역 준공시 공사기간 산출 근거 등이 성과품으로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었다.

나. 공공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미명시

고시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시·군·구는 50억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 등의 명시)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고시 시행일(20**.*.**.)부터 20**.**월까지

입찰에 부친 공공 건설공사 **건 중 **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입찰 서류에 명시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계약 하도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공사 및 계약 관련법령에 따라 자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등 하도급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공법으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특허공법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보유자가 특허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에서는 설계내역상 특허공법이 주된 공정으로 발주되는 **건의 공사를 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후 일반경쟁 및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낙찰자와 계약한 후 특허공법은 기술협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로 시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허공법이 주된 공사인 경우에 입찰한 후 주된 공정인 특허 부분의 공사를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보유자에게 하도급하면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결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므로 입찰 및 하도급 승인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 일원 불량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건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역 상 특허 공법이 주된 공정임에도 입찰을 한 후 하도급계약

을 승인하여 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한하는 일괄하도급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추정금액 1억원이상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0.12.30.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021.4.1.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토록 공포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발주한 해당 공사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은 계약 집행기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키로 결정하였다면 해당 공사와 관련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공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는 구성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평가기준은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붙임 1]에 따르며, 1순위자로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또한,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법 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공법심의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법 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하며, 이때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신기술·특허공법 임의 선정

□□□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외 *건에 반영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시, 추정금액 1억이상 이며, 2021.4.1.이후 공사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된 건이므로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제안서 모집 공고,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나, 공법 선정 절차 이행 없이 1개 업체를 임의로 지명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신기술·특허공법 심의 부적정

20**년에 공사입찰(수의계약 안내) 공고한 ㅊ동 ****-*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 암거 보수보강 공사 외 *건의 신기술·특허 공법은, 2020. 12. 30. 개정된 계약 집행 기준 부칙2.(적용례)에서 시행일(2021.4.1.)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개정된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고·공법심의위원회 구성·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ㅊ동 ****-*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 암거 보수보강 공사 외 *건의 신기술·특허 공법을 20**.*.**.~20**.*.**.이틀간 서면으로 개최된 [20**년 하수암거 단면보수 및 하수 관로 비굴착 내면 보수 공법(신기술,특허)선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과의 신기술·특허 공법 자료 요청에 응답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및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매긴 후, 공법선정 대상 사업구간의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1순위에서 *순위까지의 공법을 배분·적용하였으며, *순위 업체는 예비순위로 지정하였다.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20**년에 공사입찰(수의계약 안내) 공고한 ㅊ동 ****-*번지 일원 노후불량 하수 암거 보수보강 공사 외 *건의 신기

술·특허 공법을 개정된 계약집행기준에 명시된 공법선정 절차와 다른 방식 및 기준으로 공법 선정하여 반영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등 가설건축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 주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존치기간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5(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정한 존치기간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26],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77호)」 부칙 제2조[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가설건축물 이외에 존치기간의 상한(3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신고수리 하거나 연장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26)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7)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2021년 7월 13일 이후)에 대하여 존치기간의 상한(3년)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없이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 상한(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업무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2005. 01.)」[28]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무허가건축물 단속 지침(예규 제82호)」[29]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신규 발생된 위반 건축물(**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하면서 건축주등을 고발하지 않는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남동구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 등에 따라 향후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8)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2005)」에 따르면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토록 하며, 고발시기는 2차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29) 「남동구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예규 제82호)」 제5조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을 적발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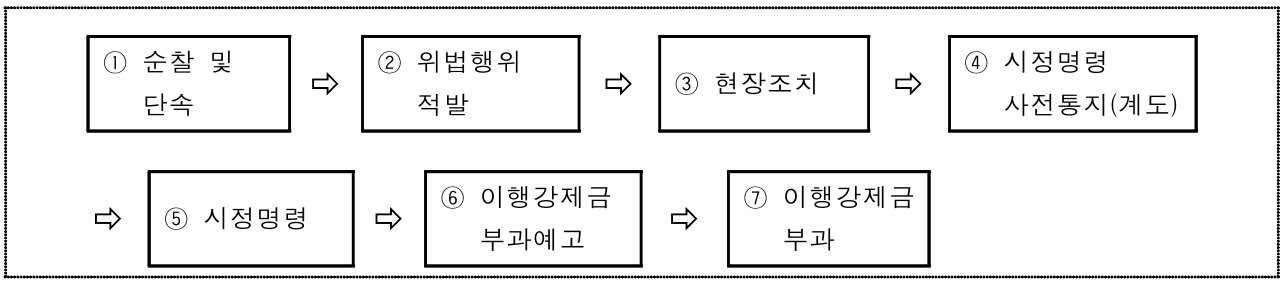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단속 및 행정처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표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행정처분 절차



※ 자료 : 남동구 제출자료 재구성

C는 20**. *. *.부터 20**. **. **.까지, D은 20**. *. *.부터 20**. **. **.까지, E는 20**. *. *.부터 현재까지, 남동구 ◩과에서 각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금번 감사기간 동안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하게 기 행위허가(건축 또는 물건적치)를 받은 현장 *개소(ㄱ동 *-**외 *)를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용, 허가용도 이외 사용 등)에 대한 단속 소홀이 확인되었다.

3. 개발제한구역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법」제13조의4에 의거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이하“관리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란 행정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직종은 1. 행정보조원, 2. 단순 노무원, 3. 환경미화원, 4. 청원경찰로 구분하며, 그 중 단순노무원은 현장 지도・단속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 채용하여 근무한 ◩과 소속 F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채용하여 근무한 ◩과 소속 G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과장(C, D)은 지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고발 등 단속·관리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토록 하였으며, ◩과장(C, D, E)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의 단속 전담 공무원 배치기준(1명/5㎢)에 따라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단속 전담 공무원을 4~5명 배치(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면적 23.76㎢)하여야 하나, 현원으로는 행정업무(인허가, 민원처리)와 순찰 및 단속 업무를 병행하기는 어려우며,

업무 과다 및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가 20**년부터 일부 시정명령 등 처분 공문을 작성하였으나 담당주무관이 함께 결재·검토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사망, 행위자 소재불명, 일부 시정완료와 원상회복 완료 약속의 의견 제출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목적이 있다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연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남동구 ◩과 ◎◎팀의 현원 총 *명(일반직 *명, 임기제 *명) 중 불법행위 단속·관리 업무가 *명(단속 전담 *명, 행정업무 병행 *명)에게 분장되어 있는 점, 감사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확인한 대상이 구청장에게 이미 행위허가를 득한 곳으로 위치와 허가범위 등 위법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현장의 위법행위 단속·관리소홀의 원인이 단순히 단속

전담 공무원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고발 등은 지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위반행위자등(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하는 것으로 거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공고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고, 일부 시정된 건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잔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시정명령 시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해 별도의 검토없이 시정명령 후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미이행(일부 시정 포함, 이행강제금 미부과 18건)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련자(업무 총괄책임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기 행위허가 현장을 점검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② 개발제한구역 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의거 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A, B, C, D, E)을 지정하여야 하며,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또는 그 밖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의 안전상태,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인지를 확인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를 검토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제3종 시설물을 지정·고시하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제3종시설물의 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 생태체험교육관 건립사업 공사감독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공원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보편적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근린공원' 내 「□□□□□ 생태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 생태체험교육관 건립공사'와 '□□□□□ 생태체험교육관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시험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생태체험교육관 건립공사”의 품질시험을 확인한 결과 ‘설계도서에 반영한 품질시험’과 ‘착공 시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공종별 현장시험, 의뢰시험, KS성적서 대체 등)’에 따라 품질시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과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3. ‘□□□□□ 생태체험교육관 인테리어 공사’ 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에서는 '□□□□□ 생태체험교육관 건립공사'와 '□□□□□ 생태체험교육관 인테리어 공사'의 벽체 마감틀 공정이 중첩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정·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시공자가 해당 공정을 미시공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지적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완료(20**년 *월 **일, 24,851,200원) 조치하였으며, 향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①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공공건축물의 건립등을 추진하면서 발주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6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미제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주의]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공사감독, 감리자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 적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에서는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외 7개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발생된 비목(내역서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신규 비목의 단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1)의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에서 신규로 발생되는 비목에 대해서는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적용, 계약상대자와 양자간 성실한 협의,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20**년 *월부터 20**년 *월 현재까지 준공 및 진행 중인 건설공사 중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외 *개 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신규 비목의 단가 적용을 협의하는데 있어 양자간에 성실히 협의하지 않고 설계단가 적용 또는 기준에 없는 협의율로 낙찰률보다 높게 적용하여 24,483천 원이 추가되어 설계변경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비관리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업무를 하고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또한,「국토계획법」제65조 제2항 및 제6항·제7항, 제9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 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준공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됨으로 공사완료 후 소유권 이전 등 무상귀속 절차를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자 ㈜◇◇)이 20**년 *월 **일 준공되어 준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되었고, 20**년 *월 *일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가 났으면 관리청에서 직권으로 무상귀속 절차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년 *월 현재까지 ㄴ동 ***-*번지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에 절차가 이행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으로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준공하였을 때는 제9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

또한,「국토계획법」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국토계획법」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구청장은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기간이 지났음에도 20**년 *월 현재까지 완료 공고 또는 사업기간 변경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가.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비관리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감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20**.**.**.)한 '지적정리 결과'가 최종 완료되지 않은 채 공사 완료 공고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 되어, 관련 공부정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①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절차, 실시계획인가 기간연장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관계 법 및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 공공측량 이행 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공공청사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공종별, 설계단계별 측량항목은 별표 2의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고 되어 있다.

또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30]를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에게 제출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공공측량을 시행하고 공공측량성과물[31]이 작성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심사의뢰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시 발주자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공측량 성과 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20**년 *월 이후 준공 및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외 *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0)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자(발주청)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 용역 착수 후 제출.

31)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따라 측량한 성과를 국토교통부(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심사의뢰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관계 법 및 규정, 지침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소규모는 신고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고, 굴착행위(착공) 후 준공 신고하면 관할 기관의 장은 허가나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3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아야하고, 허가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행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 제37조의2 제1호, 제40조 제2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관리대상 지하수 ***개소 중 년도별로 수질검사 갱신이 도래한 지하수 총 ***개소의 수질검사를 미 실시 하였고, 지하수의 개발·이용 신고시설 **개소는 지하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상 착공일자는 확인되나 준공일자는 미 기재로 준공처리가 안된 것으로 표시되는 등 지하수의 이용 또는 폐공 등 시설 관리 후속 행정절차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받도록 하고, 지하수 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적용 기준[32]에 따라 20** 년 *월 **일 이후 설계계약한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외 *건의 공사를 준공 및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33] 50억 원 이상 공사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34] 제6조(기본안전보

32) 2019.1.15.「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의무 도입으로 2020.1.16.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33) 총공사금액이란 ,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함.
3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2020. 1. 15., 제정)의 기준에 맞도록 작성.

건대장의 작성 등), 제7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이행 확인하고,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제1항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에 따라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35] 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사는 착공 후 고시 및 매뉴얼에 맞도록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행여부를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ㄷ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외 *개의 사업은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로 분리하여 설계 및 발주하여 개별 공사로 간주 총공사비 50억 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을 하지 않았고,

'■■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 확인 날짜 누락,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절차 이행 미확인, 노사협의체 비정기 개최 등의 업무 소홀, 'ㄹ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을 하는데 있어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과 다르게 작성되어 공사 전체의 안전관리가 아닌 현장의 산업안전관리, 유해·위험요소 이

35)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등록일 2019.04.30., 고용노동부) 참조

행확인 점검 등 일부 진행되는 공정에 편중되어 확인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전체 공정의 안전에 대하여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고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관계 법 및 규정, 지침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외 **개 사업을 준공 또는 현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36]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

36) 품질관리계획 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배치, 시험실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해당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 승인, 품질관리시설 규모 및 건설기술인 배치 인원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

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중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외 **개 사업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를 승인하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개의 사업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건설공사의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관계 법 및 규정, 지침에 맞도록 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 구

제　　목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소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151개의 도시공원과 202개의 녹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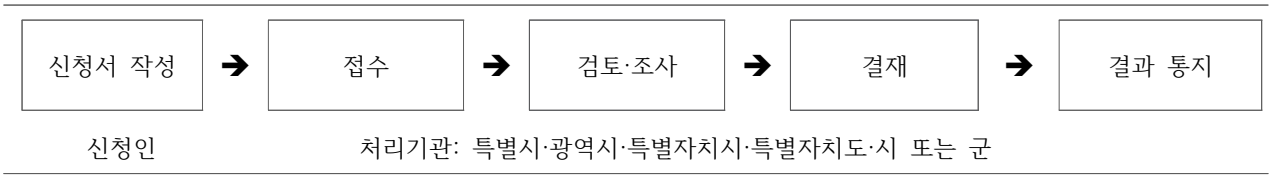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공원녹지 관리청의 장에게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공원·녹지 점용허가의 처리절차는 [그림1]과 같으며 점용허가는 점용

시작일 이전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림1】 공원녹지 점용허가 처리절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구성

또한, 공원녹지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점용료)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료는 허가할 때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녹지법 제25조(원상회복)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는 바로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한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따르면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관리청의 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최근 3년간 **건의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변경)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을 점용 시작일 이후 점용허가 하고, *건의 점용허가 건에 대해 점용료 납부를 허가할 때 일괄 징수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부과하였으며, *건의 점용 기간 만료에 따른 점용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건의 점용건에 대해 허가 만료기간 산정 없이 점용허가 한 사실이 있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3년이내)으로 만료기간을 산정하여 다시 점용허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이하 '남동구'라고 한다)는 관내 ○○산을 비롯한 10개의 주요 산과 1,261ha 산림 및 가로수 39,830주 등을 도시숲의 조성·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사방사업 등의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산림사업은 제13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37]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으면 7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38]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에 해당할 때는 승인서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정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23.9.26이후 100만제곱미터)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라.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아.「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이라 한다)
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8)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산림기술법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5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하면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 5의 항목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최근 3년간 '20**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등 **개의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의 사업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 업무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조경석 반입에 따른 사전 승인 및 검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에서는 '□□□ 근린공원 조성공사(1단계) 등 *개 사업에서 조경석을 반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의하면 '조경석'은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 납품하여야 하며 석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납품자는 조경석에 대한 자재공급원 신고서를 제품의 실물사진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수요기관은 사전 승인 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납품자는 검사를 요청할 때에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한

토석채취(채석)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수요기관명, 공사명, 거래기간과 거래량 등 표기)와 품질시험검사성적서[39], 토석채취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및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6호, 2020. 12. 28. 시행.) 에 따라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납품 후 석면 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 함유 조경석 전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에서는 조경석 반입시 일부사업은 납품자로부터 사전승인서를 제출 받지않고 검토 승인 없이 공사현장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납품검사시 원산지증명서 및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 준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조경석 반입시 자재공급원 신고서를 받아 사전승인 후 현장에 반입되도록 조치하고 납품검사시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시험성적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9)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압축강도, 흡수율, 표건비중, 석면함유 시험결과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원 조성공사(조경) 산출수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에서는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공간적 기능이 저하된 완충녹지에 공원기능이 요구되는 녹지를 활용하여 생활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승기천변 녹지 내 산책로를 정비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공사(조경)'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설계서 등의 공사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 및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 단계에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에서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조경)' 과 관련하여 일부 공정에서 사고석 m당 수량을 1.2㎡(실제1.1㎡)로 임시침사지 토낭을 ***개(실제 ***개)로 포장공 기초 및 거푸집의 산출물량을 과다 적용하여 공사비 12,276천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과다 계상된 공정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금12,276천원을 감액하고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 단계에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설계내역 적정성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보험료 계상 및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目과

내　　용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에서는 사회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에 따라 사회보험료[40]를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1항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의 보험료 적용기준[41]에 따라 모든 건설공사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40)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1항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에 따라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 옹벽 경관 개선 사업 벽화공사'외 *건에 대한 건설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년 ▣▣▣▣ 집수리공사 2차' 외 *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검사함에 있어 정산 대상 사회보험료[42]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개인 부담금을 포함 정산하여 5,894,840원을 과다 지출하였다.

- 고용보험의 보험료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42) 정산 대상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5,894,840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시설공사 추진 시 관련규정에 맞게 사회보험료를 반영, 정산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10.5.)」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동 사용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비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A)[43]와 산출(B)[44]를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10.5.)」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같은 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같은 기준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 전통어시장 현대화사업 해수족욕장 그늘막 설치공사'외 *건에 대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서상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 생태체험교육관 건립공사'의 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A)와 산출(B)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큰 금액인 산출(A)로 계상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년 ◱◱◱◱ ◱◱◱◱ ◱◱공사' 외 *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정산)검사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등 관련 증빙 서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43) 산출(A)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요율 + 기초액
44) 산출(B)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1.2

정산하지 않고 1,384,690원을 과다 지출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4,690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시설공사 추진 시 관련규정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 정산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일시정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관 계 부 서 ⊗과, ★과, 目과

내　　용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에서 **년 이후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절기 공사중지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총 **건의 공사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 하는 사유로 1)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5절 1-바[45]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45)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동 예규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1항 4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향력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기준 16조 3항에 따라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는 'ㅁ동 ○○○○ 개선사업' 외 *개공사에 대하여 도로포장 양생기간 감안 노면표시 품질관리, 도로 압밀 침하 기간 고려 등 공사 공기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사 일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시장 활성화사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습윤공사 보양기간 필요의 사유로 공사를 7일간 중지하였으며 공사중지 사유가 주요공정(Crical Path)에 포함되어 계약기간 연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 일시정지 기간에 대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업무에 소홀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향후 건설공사 추진 시 관련규정에 맞게 일시정지 및 공사기간 연장 업무를 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사건개요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에서 추진한 5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건으로 이중 토사발생량이 1,000㎥ 이상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은 ◍◍◍◍◍ 복합시설 건립공사(건축) 외 *건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7조제3항 및「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국토부 고시 제2019-227호(2019.05.10.)」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 순성토 발생량이 1,000㎥이상인 건설공사는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9조에 따르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을 입력하는 시기는 설계준공시에는 10일 이내, 향후 설계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발주한 건설공사 중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록 대상이 되는 1,000㎥이상 발생 토량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입력하여야한다 그러나 20**년 '△△△△문화센터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 외 *개 건설공사에서는 총13,354㎥의 토석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건설공사의 토석자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 복합시설 건립공사(건축)외 *개공사의 경우 최초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한 시기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5~6개월이 경과된 후 입력하는 등 토석정보 입력시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향후 시설공사 추진 시 관련규정에 맞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상 13, 노외 49) **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 규모[46]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 개소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이 미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관련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6)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면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최근 3년간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청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게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에 따르면 청문통지기간 산정 시 송달 시기는 최소한 청문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도달되어 의견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47](도달주의)하고, 공시송달은 연락처를 찾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청문 일자는 공고기간을 미포함하여 의견 준비기간 10일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및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가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48]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건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우

47) 예시)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소요기간이 4일이고 1일자로 발송한다면
- 도달일 5일, 청문일은 의견준비기간(6~15일) 10일 경과 후, 16일 이후가 됨

48)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편이 도달되어 의견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하여 송달시기를 정하여야 하나, 청문실시통지 공문을 청문일 10~12일 전에 결재 후 송달하여 송달소요기간(2~3일)을 고려하면 준비기간 10일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문을 시행하면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지만 *건은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팀장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준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과)는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및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에 대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청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또는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및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회피)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가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49]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시행하면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지만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팀장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등 청문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청장은**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축산물 위생검사 및 위생교육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과)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영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축산물 영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H은 20**. *. *.부터 20**. *. **.까지, I은 20**. *. **.부터 20**. **. **.까지 □과에서 축산물 위생검사 및 위생교육 관리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J은 20**. *. *.부터 20**. **. **.까지, K은 20**. *. *.부터 20**. **. **.까지 □과 동물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L은 20**. *. *.부터 20**. **. **.까지 □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축산물 위생검사(점검)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50]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출입·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㘝과)는 최근 3년간 실시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의 연간 위생검사(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전수 위생검사(점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장만 위생검사(점검) 하였으며, 직전 종합감사에서도 동일사항으로 주의요구를 받았음에도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하지 않는 등 위생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0)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3.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0조(위생교육)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51]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51)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05호) 제11조(축산물 위생교육 실시)와 제12조(교육결과 보고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허가(신고)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4항제2호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구청장은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1]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는 위생교육 대상자의 교육수료 여부 확인 및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위생교육 미수료자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자 **명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건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직전 종합감사에서도 동일사항으로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생교육 미수료자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위생검사 대상업소에 대한 검사와 지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하지 아니한 위생교육 미수료 건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하시기 바라며 위생교육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위판장 시설개선 지방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㘝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㘝과)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수산분야 시비보조사업 집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노후된 수산물 위판장을 주기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위판량 감소 방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년 수산물 위판장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교부)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기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금 지급의 부담능력 유무(자부담능력 유무), 지방보조금통장 및 지방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준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에서는 인천시 □과-000호(20**. *. *.)와 관련 20**년도 수산분야 시비보조사업 집행지침 수산시장 시설개선 분야에 사업대상자가 ◈◈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보조사업대상자인 ◈◈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비목별 사업비를 산정하여 산출)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하도록 통보하지 않아 ◈◈에서는 자체 신청서 양식으로 20**. *. **. 공문 시행하여

남동구에 20**. *. **. 접수하였다. 이로 인해 ◈◈은 보조금교부 결정전인 20**. *. **. ㈜◐◐와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보조사업을 보조금교부 결정전에 시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남동구(□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 및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 없이 남동구 □과-00000(20**. *.**.)호와 같이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한 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실시설계용역과(20,000천원/20**. *. ** 계약체결) 환경신고서관련인허가(3,000천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지방보조금을 결정하고 교부하였다.

3.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미제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기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령 등에 따라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

4.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서 작성은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에서 실적보고서 없이 20** 년 ▲▲▲▲ 사업 준공서류만 제출(20**. *. **.)하였으나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도 없이 준공서류만으로 정산하였고 보조금교부조건에 따르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남동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여 정산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농축수산 지방보조사업 추진절차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ㅁ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ㅁ과)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20**년도 농축수산분야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미준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제3항에 따라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는 농축수산분야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개 사업중 **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고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는 모두 받지 않았다.

3.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보조비목 미산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는 농축수산분야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 사업 중 **개 사업에 대해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을 산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개 사업은 사업내용으로 표기하는 등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4. 지방보조사업 정산 절차 미준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과)는 농축수산분야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 사업 중 *개 사업에 대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계서류만 제출하였고 *개 사업은 정산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2]는 음식물류 폐기

5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따른 ①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상호 또는 소재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8조(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는 제외)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②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구 조례로 제외 대상업종을 정하는 경우는 그 조례를 따름) 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④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⑥ 그 밖에 구 조례로 정하는 자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관내 인허가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확인한 결과, '◈◈' 등 **개 업소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중 **개 사업장은 법 제38조 및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동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실적보고 제출 등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 등 12개 부서는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53](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53)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대통령령[54]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처리실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이하 “올바로시스템”[55])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보고, 검사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 감사대상기간 동안 남동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

54)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55)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출 및 처리 실적보고 제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 등 12개 부서는 '20**년 ○○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등 **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또는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 감사기간 동안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과는 법정기한 내에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과와 ★과는 폐기물 실적보고를 작성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임시저장은 완료하였으나 제출버튼을 누르지 못해 최종적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이 미제출된 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등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가 누락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 등 4개 부서(이하 “남동구”라 한다)는 공원,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폐기물법」제2조(정의)제15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56]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56)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농어촌도로, 도로공사, 용지조성사업, 하수관로 설치공사, 공공하수·분뇨·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물류단지 개발공사, 주차장 설치공사, 매립시설 복토공사 등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0조(순환골재등의 사용 범위) 및 제11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따라 시비보조로 시행하여 군·구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중 ①대지면적 5,000㎡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②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포함) 사용추정량이 300㎥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 ③대지면적 1,000㎡이상이고, 건축면적 300㎡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공사 시에는 순환골재등의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의하면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 등”이라 한다)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57]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보고, 검사 등) 및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의 규정에 따라 배출신고자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이하 “올바로시스템”[58])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57) 「인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받은 사무 중 순환골재등 사용계획서 접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

5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과 등 4개 부서는 '△△△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원·체육시설 등 *개 공사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주차장·문화시설 등 *개 공사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예상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사용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상당기일 지나서 제출하였고, 용도별 사용량에 관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의무사용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계획서의 제출 및 사용실적보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ㅇ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ㅇ과(이하 “남동구”라 한다)는 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로 ‘■■’를 선정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 지방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방법에 대한 조치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①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의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지방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때 잔여 보조금 교부여부 결정을 위하여 수행상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등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는 최근 3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환경분야) 교부결정사항을 통지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제재 및 벌칙 사항'과 '유사사업의 중복보조 제한' 등의 내용을 일부 누락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또한 남동구는 본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마다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완료에 따른 정산검사 외에는 보

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다.

3. 지방보조금 정산 및 성과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정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는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및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2021년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에서는 지방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하였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사전 사용승인 제도)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는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환경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환경정화활동, 나무심기 등 다양한 주민참여행사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다과비 등을 반영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남동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동구에 제출한 '사회단체보조금(환경분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수행실적이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제출한 수행계획서(보조금 산출기초 포함)상의 사업량에 못 미치거나 일부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는 보조금을 100% 집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는 실적보고서에 사전승인 절차없이 교부결정 이전에 실시한 활동내역(20**년도 *건, 20**년도에 *건)을 포함하여 예산집행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의 실적보고에 따른 정산 및 평가를 하면서 사전승인을 위반하여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활동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하나 별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가 제출한 실적보고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확정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남동구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20**.4.29., 20**.5.3., 20**.4.14.)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남동구가 보조사업자에 실시한 교육은 사업착수 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일괄교부에 따른 수행상황의

수시 점검 및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시 「지방보조금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교부조건과 방법을 준수하시고,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이하 “남동구”라 한다)는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시료채취 및 위반확인서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조(용어정의)에 의하면 “지도·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규정 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에 따라 지도・점

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3조(위반사실 확인 등)에 따라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제14조(확인서 관리)에서는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59]의 직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8)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위반확인서 작성에 오류 등이 있어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60]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남동구는 20**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발급된 확인서 중 **건의 위반확인서와 **건의 시료채취확인서를 분실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총 *건의 확인서를 파기하였음에도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고, 파기된 확인서 중 *건은 실제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59)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음
60)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인구 50만 이상의 시포함) 및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지방 환경청의 경우 단·과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음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파기된 확인서 *건 중 *건은 사업자에 파기사유를 적정 통보하지 않았다.

3.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21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제2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 내지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등록, 인가 등 포함) 취소 등 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하고, [표]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

행 정 처 분 사 항		확 인 시 기		확인횟수 (확인주기)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조업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종료일	2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	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3일 이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회 이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완료시 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별표 6]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 감사기간(20**.*. ~ 20**.*. 현재) 동안 남동구에서 조치한 행정처분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동구는「대기환경보전법」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을 행정처분한 후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개 사업장의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확인서와 위반확인서의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반영하여 확인서 관리대장을 재정비하시고, 「대기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사업중지 및 폐쇄명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최종확인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과징금)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벌칙)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조사 등)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서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 검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검인 신청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ㅂ동 ** 외 *건의 판결문 검인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87,092,88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 *. *. 등 부과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ㅅ동 *호외 *건의 과징금 부과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적정하게 처분하지 않아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부과된 과징금 187,092,880원을 신속히 부과·징수하고 고발 등 미조치 내역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통보 등 조치를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지연과태료 미부과**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ㅇ동 ** 외 *건의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에 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지연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지 않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제출기한을 1일 경과한 건으로 앞으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과태료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부과된 과태료 2,000,000원을 신속히 부과·징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의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합병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부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등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ㅈ동 ** 외 **필지에 대하여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한 **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변동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고, 변동이 누락된 토지는 소유자에 즉시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변동 신청에 관한 협의 실시, 건축주에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지목변경 사유가 없거나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변동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서 협의, 토지소유자 등 안내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조치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거래가격의 정밀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금지행위)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서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에서는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제7조(조사대상)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검증체계에 의해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어 조사를 요청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 부동산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 등 정밀조사 대상에 대한 조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 *. 등 상시모니터링 등록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ㅊ동 ** 외 **건, 20**. *. **. 등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통보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ㅋ동 ** 외 **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최대 약 1년 동안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가격 등의 정밀조사 대상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개업공인중개사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 및 조치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 개업공인중개사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통보에 따른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 *. **. 등 통보된 관할분류번호 인천 남동구 ** 외 **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최대 약 1년 동안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통보에 따른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기본조사서 등 작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토지등에 관한 공부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항목을 누락하는 등 소홀히 작성하고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아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법령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가. ■과에서는

20**.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0호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한 ◎◎◎◎◎◎ 개선사업에 대하여 기본조사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20**. *. **. ㅌ동 ** 외 *필지의 토지, ㅌ동 ** 외 **개소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20**. *. **.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회신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 **. *. 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20**. *. **. ㅌ동 ** 외 *필지의 토지, ㅌ동 **-*** 외 *필지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시점을 20**. *. **.로 제시하고 회신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 *. **. 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여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나. ⊗과에서는

⊗과-00000(20**. *. **.)호 “ㅍ동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부지 협의매수 추진 계획”에 따라 공익사업 계획이 확정된 ㅍ동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0**.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0호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한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20**. *. **. ㅍ동 ** 외 *필지의 토지, ㅍ동 ** 외 *개소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시점을 20**. **. *.로 제시하고 회신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 **. *. 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다. ◩과에서는

20**.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0호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한 ◓◓◓ 소로*-***호선 도로개설공사와 20**.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호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한 ◓◓◓ 소로*-***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과-0000(20**. *. **.)호 “◇◇◇◇◇◇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공익사업계획이 확정된 ◇◇◇◇◇◇ 건립사업에 대하여 기본조사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20**. *. **. ㅎ동 ** 외 *필지의 토지, ㅍ동 **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시점을 20**. *. **.로 제시하고 회신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20**. *. *. 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 ◪과에서는

20**.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0호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한 ㄱ동 소로*-***호선 보행로 설치공사 대하여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제6조에 따른 기본조사서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조사기간 및 작성일 등을 누락하는 등 기본조사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마. ★과에서는

20**.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000호에 따라 실시계획 공고한 ㄴ동 ◎◎◎◎◎ 정비사업(1단계), 20**.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00호에 따라 실시계획 공고한 ㄷ동 ▲▲▲ 정비사업에 대하여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제6조에 따른 기본조사서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조사기간 및 작성일 등을 누락하는 등 기본조사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가. ◧과, ◩과, ◪과,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나. ⊗과에서는

ㅍ동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인가·승인 등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조사서 작성 대상이 아니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는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가격조사가 가능한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 등의 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등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토지등에 관한 공부의 조사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2 토지수용 업무편람」(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발행) 52쪽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때로 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

우는 행정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본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프동 **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밖에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의견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고 적법하게 보상액을 산정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재결 신청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 의하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처리담당자는 민원문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ㄹ동 **번지 일원 소로*-*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20**. *. **. 인천광역시 남동구 ㄹ동 ** 외 *필지의 토지소유자 A 외 *명이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 청구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공람·처리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 *. *. A 외 *명이 수용대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진행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청구서를 접수하자 수용재결 신청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 지난 20**. *. **.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 *. **. 인천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보상금에 지연가산금 119,903,320원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당시 사업비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협의 보상을 진행하였고 수용재결 청구 당사자에게는 협의가 안된 보상대상자 전체에 대해 일괄 수용재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상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용재결 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우려가 있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20**년 본예산, 20**년 추가경정예산, 20**년 본예산을 인천광역시 ◪과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년 본예산 편성 즉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용재결 지연가산금 발생한 사항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남동구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ㄹ동 **번지 일원 소로*-*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A 외 *명이 청구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었고 해당 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동구 단독으로 예산 편성이 곤란하였으며,

20**년 본예산, 20**년 추가경정예산, 20**년 본예산 편성 시 인천광역시◪과에 시비 보조를 요구하여 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즉시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남동구에서는 총 보상예산 4,356백만원 중 1,500백만원만 확보된 상태에서 20**. *. *. ㄹ동 **번지 일원 소로*-*호선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 계획(안)을 수립하고, 20**. *. *. 보상대상 물건의 일부인 ㄹ동 *** 외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인 2,397백만원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확보된 보상예산을 초과한 2,397백만원으로 20**. *. *. A 외 *명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고 20**. *. **.부터 20**. **. **.까지 순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1,10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 *. **. A 외 *인이 813백만원의 손실보상액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자 예산부족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확보된 보상예산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실시한 결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남동구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20**. *. **. A 외 *인이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 청구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공람・처리 등을 하지 않아 20**. *. *. A 외 *인 수용재결을 촉구하는 민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액 산정, 협의 취득 대상, 협의 취득 일정 등을 검토하여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61]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61)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상기 각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서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노외주차장 또는 화물주차장이 아닌 총 **건의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현지 출장을 통해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지, 차고지 설치 여부 검토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계약서나 토지사용승락서 등 서류 제출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B 등 **건 신청인으로부터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건에 대해 서류 첨부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현지 출장을 통해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지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7항에 따라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1에서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사용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또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20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1대)인 경우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라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경과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향후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 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규정인「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3조(검사 등), 제44조(과태료)는 (시행 2022. 8. 4.)[제18822호, 2022. 2. 3.]로 일부개정[62]되었다.

62) 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8.4.] [제18822호, 2022.2.3., 일부개정]
- 제13조 검사 등 제5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
-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5호 '제13조 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13조 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제44조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 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의거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10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주) 등 *건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경과하여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였다.

또한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받은 **건에 대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상당기간 경과하여 부과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정기검사 미수검 3건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등록 등)에 따라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 말소 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설기계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설기계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등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수출이행신고 미신고 *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직권말소 건설기계 번호판 미반납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3조(검사 등), 제44조(과태료)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대에 대해서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상당기간 반납 촉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미반납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처분자(건설기계조종사면허자)를 보호하고 일선 지자체(처분권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중 처분 관청이 판단하여 한 가지에 대해 처분하도록 문서를 시행하였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건설과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종료일이 만료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최초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적성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동안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에 따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이행 여부를 말소등록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1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인천시 교통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고 자동차 수출의 어려움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제외 기간을 수출말소 신고 기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통보하였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기간 이후 자동차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고 만료일이 **일 이상 경과 되어 과태료 최고 부과 금액(50만 원)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시정] 「자동차관리법」을 숙지하여 수출이행 여부 미신고 건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81조(벌칙) 제8호에 따르면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5조(통칙)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81조(벌칙) 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에 따르면 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63]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무단방치차량으로 강제처리(폐차)된 건에 대하여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건에 대하여 상당기간 경과하여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63)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자동차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계약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과에서는 15건의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전기공사를 시행하였다.

2. 물품구매 계약 업무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년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1구역) 외 *건의 공사에서 가로등주, 등기구 등, 총 303,863천원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고, 소요 자재의 수요 예측이 어려우며, 등주 등 규격이 다양하여 창고 보관이 어려워 지급자재로 보유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급자재로 설계 반영하여 집행하는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3. 고재처리 관련 예정가격 작성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 중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부대비용의 처리가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년 **월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한 사업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기존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하나, *개의 사업에 대하여 총 17,385천원을 재료비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공사원가 계산서의 재료비 항목에서 공제함으로써 기타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와 연동되어 예정금액(도급금액)이 감액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4.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지침 준수 필요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51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및「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림1]과 같이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하여야 하며,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1】 이동식사다리의 안전작업지침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홍보자료 발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 ◪과에서는 20**, 20**년 ◎◎◎ 안전한 거리 만들기 공사 시,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보안등 교체 작업을 하는 등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을 준수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주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